KERC Issue Report

# Horizon Europe 시스템 및 제도

geneticse-vehicle How digitalization biodynamics Cloud computing public health data mining Alfinancial analysis sustainable development biotechnology SCIENCE E Green partnership biofuels dark matter attimate an interaction cancer medicine economy industry 4.0 mannering the education economy industry 4.0 mannering the education extent of thics solar carbon neutral openness physicstransparency. Nano research infrastructure experitumanity research configuration astronomy math, smart c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vid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vide melecular architecture quality of life water engineering life battery psychology cooperation KERC Ner data protection circular economy anti-virus governance elimate change knowledge agriculture

DOILCY CO2 security novel food workplace safety them environment Green Deal augmented reality FET remewable energy from the communication energy from a communication energy

# Horizon Europe 시스템 및 제도

[발행일] 2023.08.25.

[발행처] 한-EU 연구협력센터 Rue de la science 14A

1040 브뤼셀, 벨기에

http://www.k-erc.eu

+32 (0)2 880 39 05

[발행인] 조 우 현 센터장

[담당자] 송 예 일 연구원

[저 자] 송 예 일 연구원

본 자료는 한-EU 연구협력센터(KERC)가 발행한 보고서로 상업적 혹은 정치적 목적의 이용을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인용·재가공 할 수 있습니다.

# Content

주요 용어4
I. 서론       5         1. Horizon Europe 개요       5         2. 분석 배경 및 목적       8
Ⅱ. Horizon Europe 규칙 및 절차11
1. Horizon Europe 관련 법규정 ·······11
2. 집행위 전문가 그룹 / HE 그림자 프로그램 위원회······· 25
3.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위원회······ 29
4. Horizon Europe 전략 계획34
5. 그랜트 협약(Grant Agreement)······· 42
Ⅲ. Horizon Europe 시스템 및 제도 ·························47
1. HE 연구 주제 기획 시스템 ·······47
2. HE 과제 평가 시스템 52
3. HE 연구 결과 공개 제도 56
4. HE 지식재산권 제도······· 61
5. HE 감사 제도······· 66
IV. 시사점 ···································



# □ 주요 용어

약어	영문	국문/설명
EC	European Commission	유럽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집행위
HE	Horizon Europe	호라이즌 유럽
FP	Framework Programme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EU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EU 연구 펀딩 프로그램)의 준말
R&I	Research & Innovation	연구혁신
DG RTD	DG Research & Innovation	집행위원회 연구혁신 담당 총국, DG R&I
	EURATOM	유럽원자력공동체, 유라톰/ 여기서는 HE을 보완하는 원자력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을 뜻함
ERA	European Research Area	유럽단일연구공간
ERC	European Research Council	유럽연구위원회
EIC	European Innovation Council	유럽혁신위원회
EIT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 Technology	유럽혁신기술연구소
KIC	Knowledge & Innovation Community (EIT의) 지식혁신커뮤니티	
JRC	Joint Research Centre 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	
OLAF	European Anti-Fraud Office 유럽사기방지사무국, 유럽부패방지총국	
	Action	액션/ EU 그랜트 협약에 의해 펀딩되는 프로젝트
	Grant	그랜트 / 협약에 의해 지급되는 보조금
	Participants 참여자 / 액션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	
BEN	Beneficiaries	수혜자 / 협약 서명자를 뜻함
AE	Affiliated Entities	협력기관/ 협약 서명자와 제휴하는 단체
AP	Associated Partners 파트너기관/ 액션에 참여하지만 기여나 비용 청구할 권리가 없는 기관	
	Purchases	구매/ 액션의 일부는 아니나 액션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품, 노동, 서비스에 대한 계약
	Regulation	규정/ 발효 즉시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EU 법률
	Decision 결정/ 특정 대상(회원국, 기업, 개인 등) 케이스와 관련하여만 법적 효력이 있는 EU 법률	
	Implementing acts	이행법
	European Partnership	유러피안 파트너십, 파트너십
JU	Joint Undertakings	공동사업단 (유러피안 파트너십의 한 유형으로 기관화된 파트너십을 일컬음)
	Association	HE 준회원국 가입
AC	Associated country	HE 준회원국
NCP	National Contact Point	국가연락관
	Widening Countires	참여확대국가/ R&I 성과가 저조한 유럽 15개국(주로 동·남부유럽)을 일컬음

# 1. 서론

# 1 Horizon Europe 개요

# □ Horizon Europe이란?

- EU의 연구혁신 주요 펀딩 프로그램
  - 호라이즌 유럽은 '21~'27년 다년재정계획(MFF)의 연구혁신 부문을 위한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예산은 955억 유로에 달함

### □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의 목적

- **HE 프로그램의 목적은** 연구혁신에 대한 EU의 투자를 통해 과학적·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impact)를 산출하는 것임
  - EU의 과학기술 기반 강화 및 모든 EU 회원국의 경쟁력 육성
  - EU의 전략적 우선순위 이행 및 EU의 목표와 정책 달성에 기여
  - 2030의제 및 파리 협정의 원칙에 따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및 글로벌 과제 해결
  - 유럽단일연구공간(ERA) 강화
  - 이를 위해 HE는 EU 회원국이 단독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HE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a)	<ul> <li>과학적 우수성의 개발·촉진·발전</li> <li>스킬·기술·솔루션에 대한 지식의 생성 및 확산 지원</li> <li>연구원의 교육 및 이동성 지원</li> <li>모든 수준의 인재 유치</li> <li>EU 인재풀이 HE 프로젝트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li> </ul>
(b)	<ul> <li>지식 생성</li> <li>EU 정책 개발·지원·이행에 있어 R&amp;I의 영향력 강화</li> <li>유럽 산업의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한 접근 및 활용 지원</li> <li>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포함한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li> </ul>
(c)	모든 형태의 혁신 촉진    기술개발·시연·지식이전·기술이전 촉진    혁신적인 솔루션의 보급 및 활용 강화
(d)	<ul> <li>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최적화</li> <li>R&amp;I 성과가 낮은 국가를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의 프로그램 참여 장려 및 유럽 R&amp;I 협력 관계 촉진</li> </ul>



### □ 프로그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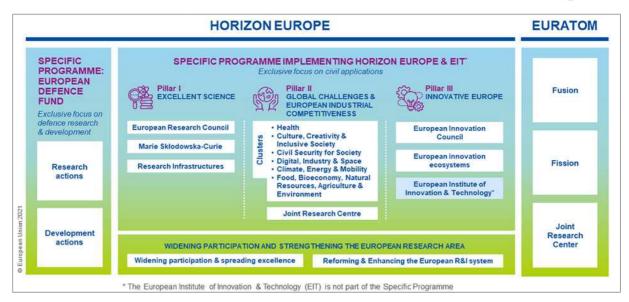
○ HE의 구조는 앞서 언급한 HE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됨

필라1 '우수 과학'	필라2 '글로벌 도전과제 및 유럽 산업 경쟁력'	필라3 '혁신적인 유럽'
1. 유럽연구위원회 (ERC) 2. 마리퀴리 프로그램 (MSCA) 3. 연구 인프라	1. 클러스터1 보건 2. 클러스터2 문화·창의성·표용사회 3. 클러스터3 사회를 위한 시민안보 4. 클러스터4 디지털·산업·우주 5. 클러스터5 기후·에너지·이동성 6. 클러스터6 식품·바이오경제·천연 자원·농업·환경 7. 공동연구센터(JRC) - 원자력부문제외	1. 유럽혁신위원회 (EIC) 2. 유럽혁신생태계 (EIE) 3. 유럽혁신기술 연구소(EIT)
참여확대 및 ERA 강화 (WID-ERA)		
1. 참여 확대 및 우수성 확산 2. 유럽 R&I 시스템 향상 및 개편		

#### ① 필라1 '우수 과학'은 EU의 글로벌 과학적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 필라1은 유럽연구위원회(ERC)를 통해 최고의 연구자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실행하는 상향식 프론티어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마리퀴리 프로그램(MSCA)를 통해 포닥 연구원을 위한 펠로우십, 박사과정 네트워크, 연구자 교환 및 이동성 등을 지원함
- ② 필라2 '글로벌 도전과제 & 유럽산업 경쟁력'는 사회적 도전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6개의 클러스터를 통해 기술적, 산업적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이는 야심찬 목표를 지닌 5개의 EU 미션을 설정하여 가장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필라2에 포함된 공동연구센터(JRC)는 과학적 증거와 기술적 지원을 통해 EU 및 국가 정책입안자들을 지원함
- ③ 필라3 '혁신적인 유럽'은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통해 유럽을 혁신 시장의 선두주자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필라3는 교육·연구·혁신의 통합을 육성하는 유럽혁신기술연구소 (EIT)를 통해 유럽의 전반적인 혁신 분야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함





- 이 외에도 Horizon Europe에는 방위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유럽방위기금(EDF), 원자력 연구에 관한 EURATOM, EU 회원국의 R&I 잠재력의활용을 지원하는 WID-ERA 등이 있음

# □ HE 예산 구조

프로그램 구조	단위: 백만 유로
필라1 Excellent Science	25,011
유럽연구위원회(ERC)	16,004
마리퀴리 프로그램(MSCA)	6,602
연구인프라	2,406
필라2 글로벌 도전과제 및 유럽 산업 경쟁력	53,516
클러스터 1	8,246
클러스터 2	2,280
클러스터 3	1,596
클러스터 4	15,349
클러스터 5	15,123
클러스터 6	8,952
JRC	1,970
필라3 혁신 유럽	13,597
유럽혁신위원회(EIC)	10,105
유럽혁신생태계(EIE)	527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	2,965
WID-ERA	3,393
참여확대 및 우수성확산	2,955
유럽 R&I 시스템 개혁 및 강화	438
총계	95,517

# 2 분석 배경 및 목적

# □ Horizon Europe 국제협력 접근방식 및 전략

#### ① 유럽의 연구혁신 국제협력 전략 - 글로벌 접근방식1)

- 코로나19로 인해 EU와 회원국들은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과 글로벌 공공재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생태계 보존, 국가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이에 따라 EU는 글로벌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FP내 국제협력 강화 전략을 수립함
- EU 집행위의 R&I 분야 국제협력 전략은 ▲R&I 국제협력에 대한 개방성유지, ▲근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공평한 경쟁의 장과 상호주의 장려, ▲녹색·디지털·건강·혁신 도전과제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기위한 다자간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함
- 글로벌 접근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팀유럽(Team Europe) 접근방식, ②국제적 개방성 및 근본적 가치에 전념, ③공정한 경쟁의 장과 상호주의를 향한 균형, ④글로벌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 통합, ⑤우선시되는 비EU 국가 및 지역과의 협력

### ② Horizon Europe의 준회원국 확대 정책

- 이는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세계에 개방함으로써 과학 강국으로서의 리더십을 유지하고 획기적인 지식과 솔루션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따라 EU는 유럽에 인접한 국가 외에도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 EU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HE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3국은 HE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EU 회원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HE에 참여할 수 있음

<sup>1)</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2021:252:FIN



#### HE 국제협력 전략

-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핵심적인 국제협력은 HE 전반에 걸쳐 공통 우선순위
- 국제협력 액션은 상호주의와 높은 EU 표준, 가치 및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은 EU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략적 기술 영역, 핵심 인프라 및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에서 EU의 주권에 기여하도록 설계될 것임
- 국제협력에 대한 HE의 접근방식은 주요 제3국 파트너와의 타겟 액션과 결합된 다자 주의와 개방성으로 구성됨
- HE에 대한 준회원국 가입은 국제협력의 가장 강력한 형태임

#### 제3국의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제3국은 HE의 준회원국(Associated country)으로 가입할 수 있음
  - (i) 과학·기술·혁신 능력이 우수한 국가
  - (ii) 민주적 제도의 지원을 받는 인권 존중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를 포함하여 규칙 기반 개방시장경제를 가진 국가
  - (iii) 국민의 경제·사회적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 위 조건을 충족하는 제3국은 준회원국 가입 협정에 따라 HE에 참여하게 되며, 협정은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a) 제3국의 기여 및 혜택과 관련하여 공정한 균형 보장
  - (b)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기여금 계산 및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참여 조건 규정
  - (c) 프로그램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제3국에 부여하지 않음
  - (d) 정상적인 재정관리 및 EU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EU의 권리 보장

### □ 우리나라의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

### ○ Horizon Europe 내 우리나라 참여 현황

- 현재 우리나라는 제3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자체 예산을 통해 HE에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한국연구재단(NRF)등을 통해 국내 연구자의 참여를 위한 연구비를 조성하고 지원해 왔음
- 제8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서 국내 연구자들은 130개 그랜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ICT, 사이버보안, 스마트시티, 건강, 기후과학, 재난 대비 분야에서 128개 국내 기관의 197개의 참여가 이루어졌음



- 한편, Horizon Europe에서는 현재까지 16건의 그랜트 협약이 체결되어 14개 국내 기관에서 17개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22년 2월 제7차 과기공동위에서 우리 정부는 EU 측에 HE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23년 5월 한-EU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리나라의 HE 준회원국 가입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음을 알림
- 이에 더하여 '22년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파트너십은 HE 및 JU를 통한 디지털 분야의 공동연구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
- ※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은 HE 필라2에만 해당함

### □ 분석 목적

- 한국의 HE 준회원국 가입을 대비하여 국내 정책입안자, 연구자, 실무자, NCP 등의 HE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 있음
  - 특히 HE의 규칙, 절차, 시스템 및 제도에 대한 사전 이해는 HE 준회원국 가입 협상, HE 과제 참여 등에 있어 필수적임
  - 동 보고서의 2장은 관계자의 전반적인 이해와 추가 탐색을 돕고자 HE와 관련된 규칙 및 절차에 대한 개요 및 그 출처를 제공함
  - 동 보고서의 3장은 2장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①연구 주제 기획절차, ②평가 절차, ③지식재산권 제도, 연구결과 공개 제도, 감사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① 이는 국내 관계자들의 HE 연구 주제 기획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탐색하여 HE 참여가 한국의 주요 연구 협력 관심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② 이는 국내 연구 과제 기획 및 평가자들의 HE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있는 국내 전문가들이 HE 평가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함
  - ③ 지식재산권, 감사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준회원국 혹은 제3국으로서의 참여가 국내 참여 기관 및 연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함

# II. Horizon Europe 규칙 및 절차

# 1 Horizon Europe 관련 법규정

# □ Horizon Europe 관련 법규정 개요

- Horizon Europe과 관련된 법규정으로는 ▲HE 설립 규정, ▲HE 이행 특정 프로그램 설립 결정\*, ▲EU 재정 규정 등이 있음
  - \* 규정(Regulation)은 발효 즉시 EU 회원국 모두에 걸쳐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결정(Decision)은 특정 대상(회원국, 기업, 개인 등) 혹은 케이스와 관련하여만 법적 효력이 있음
  - 'HE 설립 규정'2)은 HE을 제정하고 HE의 참여 및 배포 규칙을 정함
  - 'HE 이행 특정 프로그램 설립 결정'3)은 HE 설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과 기간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

	HE 설립 규정(2021/695) HE 특정 프로그램 설립 결정(2021/764)	
내용	• HE 프로그램 목적       • 특정 프로그램 운영 목표         • HE 예산       • 특정 프로그램 예산         • 펀딩 형태 및 규칙       • 특정 프로그램 이행 규칙 및 추진 활동	
채택	• '21년 4월 28일 • '21년 5월 10일	
	※ 특정 프로그램 결정은 HE 규정을 보완하여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 사항을 다룸 (특히, ERC, EIC, EU미션, 워크프로그램, 위원회 절차 관련)4)	
비교	※ 특정 프로그램(Specific Programme Implementing Horizon Europe)의 구조는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가 없다는 것만 제외하고 HE 제정 규정이 제정한 Horizon Europe과 동일	
	※ 두 법안 모두 집행위원회가 동시에 준비하여 2018년 6월 제안함5)	

- 'EU 재정 규정'이은 EU 일반 예산에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하며, HE는 해당 재정 규정을 따름
- ※ 그 외 Horizon Europe의 다른 부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EIT 규정<sup>7)</sup>, 유럽방위기금(EDF) 제정 규정<sup>8)</sup>, EURATOM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 제정 규정<sup>9)</sup>

<sup>2)</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1R0695

<sup>3)</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1D0764

<sup>4)</sup>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28297/EPRS\_BRI(2018)628297\_EN.pdf

<sup>5)</sup>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28254/EPRS\_BRI(2018)628254\_EN.pdf

<sup>6)</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8R1046

<sup>7)</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1R0819



# □ Horizon Europe 설립 규정이란?<sup>10)</sup>

※ 규정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음: Regulation (EU) 2021/695 establishing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laying down its rules for participation and dissemination

# ○ 동 규정의 목적은 Horizon Europe을 설립하는 것으로, 특히 HE 참여 및 배포 규칙을 정함

- EU의 과학기술 목표와 관련 우선순위 측면에서 EU의 연구혁신 (R&I)에 대한 지원을 관리하는 프레임워크(즉, HE)의 확정
- 지원 활동의 범위, EU 재정적 참여의 최대 전체 예산과 관련 세부 규칙, 각 활동에 대한 예산 지분의 규정
- 기업, 연구센터·대학의 참여에 대한 규칙 설정 및 연구 결과 배포 관리 규칙 규정함
-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는 관련 조항끼리 묶음):

총칙 (General Provisions)	특이사항	
제1조 규정의 주제	▶ 제1조 2항에 따르면 HE 프로그램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이행됨:	
제2조 (용어) 정의	(a) EU 결정(2021/764)에 의해 설립된 특정 프로그램 (b) EIT 규정(2021/819)에 의해 설립된 EIT에 대한 재정 기여 (c) EU 규정(2021/697)에 의해 설립된 방위연구 특정프로그램	
제3조 프로그램 목적	<ul> <li>※ (a)(b)(c)모두 HE의 일부이나, 일반적으로 HE라고 함때는 (a) 부분만 해당됨 (즉, 일반적으로 HE, 프로그램특정 프로그램 등의 용어는 (a)부분만을 지칭함)</li> <li>※ 방위 연구개발은 동 규정(2021/695)이 아닌 EU 규정(2021/697)의 적용을 받음</li> </ul>	
제4조 프로그램 구조		
제5조 방위 연구개발	▶ 프로그램의 특정 목적은 4개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조가 형성됨(필라1, 필라2, 필라3, WID-ERA)	

<sup>8)</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1R0697

<sup>9)</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1R0765

<sup>10)</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LSU/?uri=celex:32021R0695



총칙	특이사항
제6조	▶ 제6조 4항: HE에서 사용되는 주요 액션 유형(type of action)은 제2조에 설명되어 있음
전략 계획 및 이행, EU 펀딩 유형	※ 일반적인 액션 유형으로는 RIA(연구혁신액션), IA(혁신액션), CSA(조정지원액션) 등이 있음
제7조	▶ 제6조 6항: HE 특정 프로그램과 EIT's KIC, 특히 필라2의 이행은 투명하고 전략적인 계획(Strategic planning, 전략 계획)을 통해 지원되어야 함
프로그램 원칙	▶ 제7조는 프로그램이 인문사회과학(SSH), 젠더측면, 시민참여, 국제협력, 다학제 접근방식 등을 보장해야 할 것을 명시함

총칙	특이사항	
제8조 미션(Missions)	▶ '미션'과 'EIC'는 HE에서 신규 도입됨	
제9조 유럽혁신위원회(EIC)	▶ 제10조: 동 규정은 유러피안 파트너십의 세 가지 형태, 목적, 원칙, 선정, 이행, 모니터링, 평가 방식 등을 명시함	
제10조 유러피안 파트너십	▶ 제11조: 집행위는 '23년 12월 31일까지 동 규정의 부록6에 명시된 미션 영역 5개와 유러피안 파트너십 영역 8개에	
제11조 미션 및 파트너십 리뷰	대해 검토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총칙	특이사항
제 12조 예 산	
제 13조 EU복구기금 재원	_

총칙	특이사항
제14조 오픈 사이언스	▶ 제16조 1항은 준회원국 가입이 가능한 제3국의 조건을 설명 하며, 2항은 한국과 같은 제3국과의 준회원국 가입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조건을 명시함
제15조 EU 펀딩 자원 간의 이동, 대안, 결합, 누적	
제16조 제3국의 준회원국 가입	



참여 및 배포 규칙 (제1장 총칙)	특이사항
제 17조 펀딩기관 및 JRC 액션	
제 18조 적격 액션 및 윤리 원칙	<ul><li>▶ 제17조: JRC가 수행하는 직접적인 액션에는 해당 장어명시된 (윤리·보안) 규칙이 적용되지 않음</li><li>▶ 제18조는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는 지원하지</li></ul>
제 19조 윤리	않음을 명시(인간 복제, 인간 유전자 변형 등)
제 20조 보 안	

참여 및 배포 규칙 (제2장 그랜트)	특이사항
제21조 그랜트	<ul> <li>▶ 제22조는 프로그램 참여 적격 법인 및 컨소시엄 조건을 설명</li> <li>※ 9항: EU 법에 따라 설립된 JRC나 국제유럽연구기관 및 법인은 액션에 참여하는 다른 법인이 설립된 회원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예: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과 EU 기관이 컨소시엄에 있는 경우 이미 2개의</li> </ul>
제22조 참여 적격 법인	서로 다른 회원국에 기반한 법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  ※ 10항: 9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는 준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본부가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있는 경우)
	▶ 제23조 2항: 제3국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EU 펀딩을 받을 수 있음
	(a) 워크프로그램에 제3국이 식별된 경우 (b) 집행위 또는 관련 펀딩기관이 해당 법인의 참여가 액션 수행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 23조	▶ 제23조 3항: 협력기관(Affiliated entities)도 워크프로그램에 식별된 국가에 속한 경우(회원국, 준회원국, 제3국) EU 펀딩을 받을 수 있음
펀딩 적격 법인	※ 한편, 집행위는 제3국 법인에 제공되는 EU 펀딩의 금액을 주기적으로 EU에 보고해야 함(준회원국의 경우 집행위는 재무 균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함)



참여 및 배포 규칙 (제2장 그랜트)	특이사항
제24조 제안 요청 (Calls for proposals)	► 제25조: 집행위 혹은 관련 펀딩기관은 제3국 및 제3국의
제25조 공동 제안 요청	과학기술 조직, 국제기구,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 제안 요청을 할 수 있음

참여 및 배포 규칙 (제2장 그랜트)	특이사항
제26조 혁신적인 솔루션에 대한 '상업화 전 구매' 및 '공공 조달'	▶ 제27조 1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금이 50만 유로 이상인 경우 코디네이터에 한해 재정능력이 입증 되어야 함
	※ 재정능력이 다른 법인에 의해 구조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이다른 법인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함
제27조 지원자의 재정능력	※ 집행위 및 관련 펀딩기관은 지원자의 재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협력기관(AE)의 연대책임신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지원자를 참가시킬 수 있음

참여 및 배포 규칙 (제2장 그랜트)	특이사항
제28조 수상 기준 및 선정	<ul><li>제29조: 일반적으로 제안서 평가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진행함</li></ul>
제 29조 평 가	<ul> <li>제30조: 지원자는 제안서의 평가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li> <li>※ 평가의 절차적 측면만이 검토 요청의 대상이 되며,</li> </ul>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평가 검토의 대상이 아님
제30조 평가 검토 절차, 문의 및 불만 제기	※ 집행위는 지원자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직접 문의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함



참여 및 배포 규칙 (제2장 그랜트)	특이사항
제31조 그랜트 기한	
제32조 그랜트 이행	▶ 제31조: 일반적으로 최종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대 5 개월 안에 지원자에게 평가 결과가 알려져야 하며, 제출 마 감일로부터 8개월 안에 그랜트 협약 서명이 되어야 함
제33조 그랜트 협약서	
제34조 펀딩비율	▶ 제37조: 수혜자는 EU 펀딩의 5%(최대 8%)를 메커니즘에 기여해야 함. 이는 초기 선지급비와 상쇄되며, 그 비용은 초기 선지급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35조 간접비	※ 수혜자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여금은 잔액 지불(payment of balance)시 반환됨
제36조 적격비용	
제37조 상호보험메커니즘	

참여 및 배포 규칙 (제2장 그랜트)	특이사항
제38조 소유권 및 보호	
제39조 활용 및 배포	
제40조 양도 및 라이선스	▶ 해당 부분은 연구를 통한 결과의 소유권, 활용 및 배포 의무, 양도, 라이선스와 결과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을 다름
제41조 접근 권한	
제 42조 특정 조항	

참여 및 배포 규칙 (제2장 그랜트)	특이사항
제 43조	▶ 워크프로그램 또는 대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한, 설립
상(Prizes)	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음



참여 및 배포 규칙 (제3장 조달)	특이사항
제 44조 조달	▶ 조달은 EU 재정 규정 VII편에 따라 수행

참여 및 배포 규칙 (제4장 혼합 금융)	특이사항
제45조 블렌딩 오퍼레이션	
제46조 HE 및 EIC 혼합 금융	
제 47조 패 스 파인 더	_
제 48조 액 셀 러 레 이 터	

참여 및 배포 규칙 (제5장 전문가)	특이사항
제49조 독립적 외부 전문가 임명	_

프로그램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평가 및 통제	특이사항
제50조 모니터링 및 보고	
제51조 정보, 커뮤니케이션, 홍보, 배포 및 활용	_
제52조 프로그램 평가	
제53조 감사	



프로그램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평가 및 통제	특이사항
제54조	▶ 제3국이 국제 협약 또는 기타 법적 문서를 기반으로 프로
EU의 재정적 이익	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은 책임자, 유럽부패방지총국
보호	(OLAF) 및 법원에 필요한 권한과 접근권한을 부여해야 함
제55조	▶ 제55조는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위임권 행사	위임법률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설명함

과도기 및 최종 조항	특이사항
제56조 (이전 규정의) 폐지	
제57조 과도기 조항	▶ H2020(2014~2020)에 해당하는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되고 동 규정이 시행되나, H2020에 따라 시작된 액션은 여전히 이전 규정의 적용을 받음
제58조 시행	

# ○ 규정에는 총 6개의 부록이 포함됨

부록(ANNEX)	특이사항			
	▶ 부록1은 프로그램의 각 필라 별 활동에 따라 활동 윤곽 (Broad lines of activities) 및 개입영역(Area of Intervention)을 설명함			
부록1	활동(activities)			
활동 윤곽	필라1 (a) ERC, (b) MSCA, (c) Research infrastructure	필리		
	필라2 (a)~(f) Cluster 1~6, (g) JRC	필리		
	필라3 (a) EIC, (b) EIE, (c) EIT	필리		
	WID-ERA	WII		

부록	특이사항
부록2	▶ 부록2는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의 활동 이행에 있어 적용
EIT	되어야 할 근거 및 개입영역에 따른 활동윤곽을 명시함



부록	특이사항
부록3	▶ 부록3은 유러피안 파트너십의 선정, 이행, 모니터링, 평가·
유러피안 파트너십	폐지·연장의 기준을 명시함

부록	특이사항		
	<ul> <li>부록4는 HE 프로그램과 다른 EU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효과를 명시함</li> <li>특히 미션과 유러피안 파트너십은 다른 EU 프로그램 및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European Maritime, Fisheries and Aquaculture Fund (EMFAF)		
	3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4 • European Social Fund Plus (ESF+)		
	5 • EU4Health Programme		
부록4	6 • Connecting Europe Facility (CEF)		
	7 • Digital Europe Programme (DEP)		
다른	8 • Single Market Programme		
EU 프로그램과의 시너지	9 • Programme for Environment and Climate Action (LIFE)		
시디지	10 • Erasmus+		
	11 • Union Space Programme		
	Neighbourhoo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strument (NDICI)     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 (IPA III)		
	13 • Internal Security Fund		
	14 • InvestEU Programme		
	15 • Innovation Fund under the Emission Trading Scheme		
	16 • Just Transition Mechanism		
	17 • Euratom Research and Training Programme		
	18 • European Defence Fund (EDF)		
	19 • Creative Europe Programme		
	20 •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		



부록	특이사항					
	(Key Imp 향한 프로 ▶ 영향 경 <u>로</u>	pact Pathv 로그램의 건	vay Indica 진행 상황( 가지 영향	ators)는 에 대한 = 범주(고	제3조어 모니터링	영향 경로 지표   언급된 목표를 링을 구성함 회, 기술·경제)에
	과학적 영향	경로 지	<del>II</del>			
		단기	중기	기		장기
		<b>출판</b> 동료검토 출판물 수)	<b>인</b> (동료 출판물의 횟=	검토 기 인용	(과학년 기여를 출モ	: <b>클래스 과학</b> 분야에 핵심적인 를 한 동료검토 판물의 수 및 점유율)
	인식사원   o	<b>스킬</b> upskilling 베 관여된 변구원 수)	<b>경</b> (upskil 연구원의 점유	led된 l 수 및	(급( 근두 upskill	<b>근무 조건</b> 여 등 향상된 <sup>근</sup> 조건을 가진 led된 연구원의 및 점유율)
부록5		<b>기식 공유</b> 연구결과 점유율)	<b>지식</b> (오픈의 연구: 점유	백세스 결과	(오픈 새로	<b>로운 협력</b> 액세스를 통해 운 학제/부문간 · 개발한 수혜자 점유율)
주요 영향 경로 지표	사회적 영향	· 경로 지.	₩.			
			단기	중:	기	장기
	EU 정책 우선순위 및 글로벌 도전과제 해	(R	결과 esults)	해결 (Solut		혜택 (Benefits)
	R&I 미션을 통한 영향 혜택 제공	및 R&I L (re	미션 결과 esults)	R&I =14	mes)	R&I 미션 목표 달성
	R&I의 사호 활용 강화		동창작 creation)	참' (engage		사회적 R&I 활용
	기술·경제적	,		,		, <u> </u>
			단기	중	기	장기
	혁신 기반 성장 생성	여 시	적 결과	혁·	신	경제 성장
	일자리 창설 및 개선	호	용 지원	고용	유지	총 고용
	R&I 투자 활	<u> </u> 용 공동	등 투자	스케	일업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3% 달성에의 기여



부록	특이사항		
	,	록6은 향후 수립 가능한 미션 및 설립가능한 유러피안 트너십 부문을 명시함	
	미션 역	경역 · · · · · · · · · · · · · · · · · · ·	
	1	기후변화 적응	
	2	암	
	3	해양, 바다, 해안, 수질	
	4	기후 중립 및 스마트 도시	
	5	토양 건강 및 식품	
부록6 미션 및 기관화된 유러피안 파트너십		185조 및 187조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기관화된 ionalised) 유러피안 파트너십 영역	
설립이 가능한 영역	1	글로벌 보건 및 보건 혁신	
	2	핵심 디지털 활성화 기술 (AI, 광자, 양자 등)	
	3	계측 분야 (통합 계측 시스템 등)	
	4	항공 및 철도 (경쟁력, 안전, 환경 등)	
	5	바이오기반 솔루션	
	6	수소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저장 기술	
	7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친환경, 연결, 자율, 자동화 등)	
	8	혁신적이고 R&D 집약적인 중소기업	



### □ HE 이행 특정 프로그램 설립 결정이란?11)

※ 결정의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음: Decision (EU) 2021/764 establishing the specific programme implementing Horizon Europe -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 ○ HE 이행 특정 프로그램 이란?

※ 사실상 특정 프로그램은 EIT 및 EDF를 제외한 HE의 모든 부분이 해당되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Horizon Europe 프로그램과 거의 일치함



# ○ 동 결정은 HE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 예산, 이행 규칙 및 수행 활동 등을 규정함

-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operational objectives), 구조 및 예산
- 전략 계획, 워크프로그램, 위원회 절차 등 HE의 이행 및 프로그래밍 관련 규칙
- 미션, ERC, EIC의 구조, 운영, 이행 관련 규칙

### ○ 동 결정에는 총 3개의 부록이 포함됨

- 부록1은 전략 계획과 다른 특정 프로그램 활동(배포, 커뮤니케이션, 국제협력 등)을 설명하고, 특히, 특정 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설명함\*
- \* 필라와 하위 활동별 근거. 개입영역과 그에 따른 활동 윤곽을 설명
- 부록2와 부록3은 프로그램 위원회 구성과 이들이 제공받을 정보를 명시

<sup>11)</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LSU/?uri=celex:32021D0764



# ○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는 관련 조항끼리 묶음):

총칙 (General Provisions)	비고
제1조 (결정의) 주제	
제2조 운영 목표	▶ 제2조에 따른 운영 목표(operational objectives)는 총 16가지가 있음
제3조 구조	※ 운영 목표에는 우수성 강화, SDGs 및 정책 우선순위의 이행 지원, 젠더 측면 강화, 국제 협력 강화, ERA 강화, 오픈 사이언스 육성, 연구 결과 활용 장려, 중소기업 연구 활동 촉진 등이 포함됨
제4조 예산	▶ 제3조: 특정 프로그램 구조는 필라1, 2, 3(EIT 제외) 및 WID-ERA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수행될 활동은 부록1에 명시되어 있음
제5조 EU복구기금 재원	

이행 및 프로그래밍	비고
제6조 전략 계획	▶ 제6조는 HE 설립 규정 제6조 6항에 따른 전략 계획에 대한 상세 내용(구성 요소, 고려 대상, 수립 절차 등)을 다룸
제7조 미션	<ul> <li>※ 전략계획에 대한 내용은 동 보고서 34 및 49페이지 참조</li> <li>▶ 제7조는 미션 이사회(board)의 구성 및 역할을 다룸</li> <li>※ 미션 이사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 그룹</li> </ul>

이행 및 프로그래밍	비고
제8조 ERC	
제9조 ERC 과학위원회	<ul><li>▶ 제8조: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설립, 구성, 원칙 등</li><li>▶ 제9조: ERC 과학위원회의 구성, 임기, 역할, 활동 내용 등</li></ul>
제10조 ERC 이행 구조	



이행 및 프로그래밍	비고
제 11조 EIC	▶ 제11조~제12조는 HE 이행 규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제 12조 EIC 이사회	EIC의 이행 방식과 EIC 이사회의 역할, 조직 구성, 임기 등을 다룸

이행 및 프로그래밍	비고
제 13조 워크프로그램	<ul><li>▶ 제13조는 워크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채택 방식 등을 설명</li><li>※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동 보고서 40페이지 참조</li></ul>
제 14조 위원회 절차	<ul> <li>■ 집행위는 이행법안을 채택하기 전에 제안하는 초안에 대해 각 EU 국가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committee)와 협의해야 하며, 이는 HE의 전략 계획과 워크프로그램 채택에도 적용됨</li> <li>※ 프로그램 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동 보고서 29페이지 참조</li> </ul>

과도기 및 최종 조항	비고		
제 15조 폐 지			
제 16조 과도기 조항	► H2020(2014~2020)에 해당하는 결정은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되고 동 결정이 시행되나, H2020에 따라 시작된 액션은 여전히 이전 규정의 적용을 받음		
제 17조 시 행			

# 2 집행위 전문가 그룹 / HE 그림자 프로그램 위원회

# □ 집행위원회 전문가 그룹(Commission Expert Groups)이란?12)

- o 집행위 전문가 그룹은 집행위에서 전문성 및 조언을 제공받기 위해 설립한 협의체(consultative body)임
  - 이들은 민간 또는/그리고 공공 부문 회원으로 구성
  - 집행위는 상당한 내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타당한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 조언을 필요로 하며, 이는 전문가 그룹이나 외부 컨설턴트 혹은 연구 등의 형태를 통해 제공됨
  - 전문가 그룹은 2개의 유형을 가짐:
    - (공식) 집행위원회 결정(decision)에 의해 설립
    - (비공식) 집행위 개별 부서가 집행위원, 담당 부집행위원장, 사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설립

#### ㅇ 전문가 그룹의 주요 역할

- 전문가 그룹은 ▲법안 및 정책 이니셔티브 준비, ▲위임입법 준비, ▲ EU 법률, 프로그램, 정책의 이행,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이행법안 초기 준비 등을 지원함
- ※ 이행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법률을 일률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규정하는 비입법적 법임

### ㅇ 집행위 전문가 그룹 기록부(Register)13)

- 집행위원회는 집행위를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기록을 공개함
- 기록부는 각 전문가 그룹에 대해 ▲그룹을 운영하는 집행위 부서, ▲ 구성원, ▲임무, ▲작업, ▲그룹 활동을 통해 생성되고 논의된 관련 문서 등을 제공함

<sup>12)</sup>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groups-explained?lang-en

<sup>13)</sup>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home?lang=en



### □ HE 그림자 프로그램 위원회 전문가 그룹이란?<sup>14)</sup>

- ※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음: Commission Expert group to act as "shadow" Strategic Configuration of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Committee(E03662)
- o 집행위는 HE 전략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그림자 프로그램 위원회 전문가 그룹을 설립함

담당 총국	DG RTD (연구혁신총국)		
유형	비공식(Informal), 임시(Temporary)		
작업	• 집행위의 법안 및 정책 이니셔티브 준비 지원 • EU 회원국과의 조정, 의견 교환		
등록일	`19년 4월 15일		
임무	HE 전략 계획 준비		
회원	EU 회원국(27개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총 29개국 대표 * 이후 리히텐슈타인도 추가됨		

- 동 전문가 그룹은 총 22개의 서브그룹(Subgroups)을 가짐

1	기후변화 적응	10	연구 인프라
2	암	11	클러스터1
3	건강한 해양, 바다, 연안, 내수		클러스터2
4	기후 중립 및 스마트 도시	중립 및 스마트 도시 13	
5	토양 건강 및 식품		클러스터4
6	HE 국가 지원 구조 운영의 최소 기준	15	클러스터5
6.1	Horizon Europe NCP	16	클러스터6
6.2	HE NCP (Legal and Finance) 17		EIC & EIE (필라3)
7	유러피안 파트너십 과도기적 포럼		WID-ERA
8	ERC		Fission
9	MSCA	20	Fusion

- 동 전문가 그룹은 '19년 5월~'21년 5월에 걸쳐 2년간 총 74회의 회의를 가짐
- ※ 각 회의의 안건, 회의록, 작업 문서 등은 전문가 그룹 기록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음(예: 그림자 프로그램 위원회 전문가 그룹 첫 회의<sup>15)</sup>)

<sup>14)</sup>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expert-groups/consult?lang-en&do-groupDetail.groupDetail&groupID=3662

<sup>15)</sup> https://ec.europa.eu/transparency/expert-groups-register/screen/meetings/consult?lang-en&meetingId=14490&fromExpertGroups=3662



# □ 전문가 그룹 절차 규칙

# ○ HE 그림자 프로그램 위원회 전문가 그룹의 절차 규칙

Point	주요 내용	
Point 1 그룹 운영	▶ 그룹은 DG RTD(의장)의 요청에 따라 행동	
Point 2 회의 소집	<ul><li>▶ 그룹 회의는 DG RTD의 동의하에 의장이 소집</li><li>- 의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회원 단순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li><li>▶ 그룹 회의는 원칙적으로 집행위 구내에서 개최</li></ul>	
Point 3 안건	▶ 사무국은 의장의 책임 하에 안건을 작성하여 그룹 회원들에게 송부하며, 안건은 회의 시작 시 그룹에서 채택되어야 함	
Point 4 문서 송부 기한	<ul> <li>▶ 사무국은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그룹 구성원에게 회의 초 대장과 안건 초안을 보내야 함</li> <li>▶ 사무국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그룹과 협의한 문서를 그 룹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함</li> <li>▶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송부 기한을 회의일 5일전으로 단축할 수 있음</li> </ul>	
Point 5 그룹 의견	<ul> <li>▶ 그룹은 가능한 경우 합의에 의해 의견(Opinion), 권고 (Recommendations), 또는 보고서(Report)를 채택</li> <li>▶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예외적인 상횡인 경우, 의장은 투표를 조직하기로 결정할 수 있음</li> <li>▶ 결정은 회원 1인당 1표씩, 회원의 단순 다수결로 채택되며, 반대 또는 기권한 회원은 자신의 입장을 요약한 문서를 첨부할 권리가 있음</li> </ul>	
Point 5a 대표	▶ 회원은 관할 국가의 당국으로 각 회원은 대표단을 구성하고 의장에게 알려야 함 (대표단은 회의실 크기에 따라 최대 4명 까지 구성)	
Point 6 서브 그룹	▶ DG RTD는 서브 그룹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서브 그룹은 그 의무를 완수하는 즉시 해산됨	
Point 7 전문가 초청		
Point 8 참관인	<ul> <li>▶ 개인/단체/공공단체는 수평적 규칙에 따라 DG RTD의 직접 초청을 통해 참관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li> <li>▶ 참관인으로 임명된 기관/공공단체는 대표자를 지명해야 함</li> <li>▶ 참관인과 그 대표는 그룹 토론에 참여하고 전문 지식을 제공하도록 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은 의결권이 없으며 그룹의 권고나 조언의 입안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음</li> </ul>	



Point	주요 내용		
Point 9 서면 절차	<ul> <li>▶ 필요한 경우 특정 질문에 대한 그룹의 의견이나 권고를 서면 절차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음</li> <li>▶ 그룹의 단순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서면절차는 결과 없이 종료되며, 의장은 조속히 그룹을 소집하여야 함</li> </ul>		
Point 10 사무국	▶ DG RTD는 그룹 및 모든 하위 그룹에 대한 비서 지원을 제공		
Point 11 회의록	<ul> <li>▶ 의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들에게 보내야 함</li> <li>▶ 각 안건에 대한 논의 및 그룹에서 전달한 의견에 대한 회의록은 의미 있으며 완전해야 함</li> </ul>		
Point 12 참석자 목록	▶ 각 회의에서 사무국은 의장의 책임하에 참가자가 속한 회원국의 당국, 조직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을 명시하는 참석자 목록을 작성해야 함		
Point 13 서신	▶ 그룹과 관련된 서신은 DG RTD로 보내야 하며, 그룹 회원에 대한 서신은 해당 목적을 위해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어야 함		
Point 14 투명성	▶ 그룹 및 서브그룹은 전문가 그룹 기록부(Register)에 등록됨		
Point 15 문서 액세스	▶ 그룹이 보유한 문서에 대한 액세스 신청은 규정 (EC) 1049/2001에 따라 처리됨		
Point 16 심의	▶ DG RTD와의 합의 하에 그룹은 단순 다수결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심의를 공개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		

- 집행위 결정 EC(2016)3301<sup>16)</sup>(집행위 전문가 그룹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수평적 규칙 제정 결정) 제7조에 따라 그룹 회원은 5가지 유형으로 구성 될 수 있음

Type A	개인적 역량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개인	
Type B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공유된 공동 관심을 대표하는 개인	
Type C	기업, 협회, NGO, 무역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유형의 조직	
Type D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차원의 EU 회원국 당국	
Type E	제3국 당국, 후보국 당국, EU 당국, 국제 조직 등 기타 공공 기관	

-

<sup>16)</sup> https://ec.europa.eu/transparency/documents-register/detail?ref=C(2016)3301&lang=en

# 3 Horizon Europe 프로그램 위원회

# □ 프로그램 위원회(Programme Committee)란?<sup>17)</sup>

- ※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음: Programme Committee for the specific programme implementing Horizon Europe the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 o 집행위는 이행법안 채택에 앞서 제안하는 초안에 대해 EU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혐의해야 함
  - 즉, 프로그램 위원회는 HE 프로그램 관련 집행위원회의 이행법(전략 계획, 워크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 미션 공모에 따른 제안 선정 등)에 대해 협의(심사 및 자문)하며, 승인 여부를 투표함
    - 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이행 권한 행사를 컨트롤하기 위해 만들어진 메커니즘
    - 위원회의 역할은 EU 규정 182/2011<sup>18)</sup>을 근거로 함
    - 해당 규정은 위원회의 일반 원칙과 규칙을 명시하며 특히, 집행위원회의 이행 권한 행사를 제어하기 위한 두 가지 절차를 명시함
      - ① 심사 절차: 주로 일반적인 범위의 조치나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조치에 사용
      - ② 자문 절차: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이행 조치에 사용
    - 한편, 동 규정에 따라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가 제안된 이행법안이 집행위에 부여된 권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이들은 집행위에 통보하여 집행위가 법안을 검토하여 유지, 개정 또는 철회하게 할 수 있음

### ㅇ 프로그램 위원회는 다음 12개 분야에 따라 구성됨

<프로그램 위원회 구성(출처:EU 2021/764 부록2)>

- ① Strategic configuration: Strategic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Programme and coherence across its individual work programmes, including missions.
- ② ERC
- 3 MSCA
- 4 Research Infrastructures
- (5) Health
- 6 Culture, Creativity and Inclusive Society
- ① Civil Security for Society
- ® Digital, Industry and Space
- 9 Climate, Energy and Mobility
- 1 Food, Bioeconom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Environment
- 1) The EIC and European Innovation Ecosystems
- Widening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the ERA

 $<sup>17)\ \</sup>underline{\text{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committees/C70400/consult?lang=en}\\$ 

<sup>18)</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1R0182



# □ 프로그램 위원회 절차 규칙

ㅇ 프로그램 위원회 절차 규칙은 다음과 같음19)

과도기 및 최종 조항	주요 내용		
제1조 회의 소집	▶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		
제2조 안건	<ul> <li>▶ 의장은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li> <li>▶ 안건은 다음을 구분하여야 함</li> <li>(a) 심사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의견을 요청받은 워크프로그램 및 일부 편딩 결정 관련 집행위 이행법안</li> <li>※ EU 지원금액이 250만 유로 이상인 간접 액션 펀딩 승인에 대한 결정 (ERC 및 클러스터 2 제외), 클러스터3 아래 수행되는 인간배아 혹은 인간배아 줄기세포가 관여된 액션에 대한 펀딩 결정</li> <li>(b) 자문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의견을 요청받은 워크프로그램 관련 집행위 이행법안</li> <li>(c) 이전 프로그램 위원회가 의견을 요청받은 집행위 이행법안</li> <li>(d) 의장의 주도 또는 위원회 위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정보 전달 또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기타 안건</li> </ul>		
제3조 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할 문서	<ul> <li>▶ 의장은 초청장, 안건 초안, 이행법안 등을 회의일 14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함</li> <li>▶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긴급 안건) 의장은 직권으로 제출기한을 최대 회의일 5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음</li> </ul>		
제4조 위원회 의견	<ul> <li>▶ 위원회는 의장이 정한 시한 내에 이행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함</li> <li>▶ 자문절차가 투표로 이어지는 경우 투표 결과는 위원회 구성원의 단순 과반수에 의해 결정</li> <li>▶ 심사절차에 따라 위원회 의견이 필요한 경우 투표 결과는 적격 다수결로 결정</li> </ul>		
제5조 대 표 단	<ul> <li>▶ 각 회원국은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 간주됨</li> <li>▶ 각 구성원은 대표단의 구성을 결정하고 의장에게 알려야 함</li> <li>▶ 의장의 허가 하에 대표단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도 대표단과 동행할 수 있음</li> </ul>		
제6조 실무 그룹	▶ 위원회는 특정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만들 수 있으며 실무 그룹은 의장의 책임하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sup>19)</sup>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committees/C70400/consult?lang=en



과도기 및 최종 조항	비고		
제7조 제3자 및 전문가	<ul> <li>▶ HE 준회원국은 가입 협정 서명일로부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됨</li> <li>▶ 의장은 특정 문제에 대해 다른 제3자 대표 또는 기타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언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li> <li>▶ 이러한 제3자 대표 및 전문가는 위원회 의결에 참석 또는 참여할 수 없음</li> </ul>		
제8조 서면 절차	<ul> <li>의장은 서면 절차를 통해 위원회의 의견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위원회 회의에서 이행법안 초안에 대해 논의한 경우 서면 절차를 사용할 수 있음</li> <li>의장은 서면 절차의 결과를 지체없이 (14일 이내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알려야 함</li> </ul>		
제9조 비서 지원	■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실무 그룹을 위한 비서 지원을 제공해야 함		
제10조 회의록 및 요약기록	<ul> <li>▶ 의장의 책임하에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회의록에 자신의 입장을 기록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음</li> <li>▶ 의장은 회의 후 1개월 이내에 지체없이 회의록을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함</li> <li>▶ 위원회 위원은 회의록 초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문제는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함</li> <li>▶ 의장은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요약 기록을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요약기록은 구성원의 개인 입장을 언급해서는 안 됨</li> </ul>		
제11조 참석자 명단 및 이해상충	▶ 의장은 각 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제 12조 서 신	▶ 위원회와 관련된 서신은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의 상임 대표에게 제출되어야 함		
제13조 문서 접근 및 기밀 유지	<ul><li>▶ 위원회의 토의 및 협의는 기밀로 유지</li><li>▶ 집행위원회는 문서에 대한 액세스 요청에 대해 결정</li></ul>		
제 14조 개 인정보 보호	▶ 위원회 및 실무 그룹의 개인 데이터 처리는 규정 EU 2018/1725를 따름		



#### ㅇ 집행위는 프로그램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함

- ① 각 제안의 전체 수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제출된 제안, 각 제안에 대한 평가 결과, 그랜트 협약, 종료 및 완료된 프로젝트 관련 정보 등
- ② 각 공모 및 프로젝트 이행의 결과에 대한 정보 각 공모(call) 결과, 제안의 평가 점수 및 순위 목록, 그랜트 협정에 대한 협상 결과, 프로젝트 결과/지급 데이터를 포함한 프로젝트 이행 관련 정보
- ③ **HE 프로그램 이행 정보** HE, 특정 프로그램, 각 필라, 관련 주제, JRC 수준의 이행 관련 정보
- ④ HE 예산 집행에 관한 정보 COST, 유러피안 파트너십, KICs, EU와 준회원국 간의 재정 균형에 관한 정보 등 포함

### □ (예시) 전략 프로그램 위원회(SPC)의 주요 활동 내용

- ※ SPC는 12개의 프로그램 위원회 중 첫 번째인 Strategic configuration 담당 프로그램 위원회를 뜻함
- 현재까지 공개된 전략 프로그램 위원회(SPC) 활동은 총 84개가 있음 <전략 프로그램 위원회(SPC) 활동 내용 일부 예시>

날짜	주제			
`21.05,26	HE 프로그램 위원회 첫 회의  1st Meeting of the Strategic Configuration of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Committee	화상회의		
`21.05.21~28	HE 'COVID' 워크프로그램 2021-2022 Part1 General Introduction Consulting the strategic configuration of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Committee on the Horizon Europe (mini-COVID) work programme 2021-2022 - Part 1: General Introduction			
`21.05.21~28	HE 'COVID' 워크프로그램 2021-2022 General Annexes 'COVID'  Consulting the strategic configuration of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Committee on the Horizon Europe (mini-COVID) work programme 2021-2022 - General Annexes	서면 심사절차		
`21.05.21~28	HE 워크프로그램 2021-2024를 위한 전략계획 Consulting the strategic configuration of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Committee on the strategic plan for the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1-2024	서면 심사절차		



`21.05.21~28	HE 메인 워크프로그램 2021-2022 Part1 General Introduction Consulting the strategic configuration of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Committee on the Horizon Europe (main) work programme 2021-2022 - Part 1: General Introduction	서면 심사절차
`21.05.21~28	HE 메인 워크프로그램 2021-2022 Part12 Missions  Consulting the strategic configuration of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Committee on the Horizon Europe (main) work programme 2021-2022 - Part 12: Missions	서면 심사절차
`21.06.22	HE 프로그램 위원회 두 번째 회의 2nd Meeting of the Strategic Configuration of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Committee	화상회의
`21.07.05	HE 프로그램 위원회 세 번째 회의 3rd Meeting of the Strategic Configuration of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Committee	화상회의
`21.07.30~ `21.08.06	H2020 CINEA 펀딩에 따른 11개 제안 선정 Consulting the strategic configuration of the Horizon Europe Programme Committee on a Draft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selecting 11 proposals for EU funding under call H2020-LC-GD-2020 - CINEA - Batch 1 (Part 1)	서면 심사절차

- 총 84개의 활동 중 위원회 회의가 19회, 워크프로그램·전략계획·예산 등에 대한 심사절차가 18개였으며, 나머지 47개는 EU 미션에 따른 펀딩 결정에 대한 심사절차였음
- ※ 위원회 회의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거의 화상회의로 진행됨
- 후반부 회의에서는 준회원국 대표단도 참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절차 규칙에 따라 투표 과정 등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 ※ 프로그램 초반부 준회원국 예산 및 참여 등에 대한 논의에서는 노르웨이 등 초기 준회원국도 해당 주제에서는 제외됨

# □ HE 프로그램 위원회 회의 정보

- ㅇ 위원회 회의 정보는 집행위 웹사이트 Comitology Register<sup>20)</sup>에서 검색 가능
  - HE 프로그램 위원회의 위원회 코드(Committee Code)는 분야에 따라 C70401에서 C70412까지 총 12개에 해당함

<sup>20)</sup>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committees?lang=en

# 4 Horizon Europe 전략 계획

# □ HE 전략계획(Strategic Plan)이란?21)

- ㅇ HE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전략계획은 HE의 투자 방향성을 설정함
  - 특히, 전략계획은 EU R&I 액션이 EU의 우선순위에 기여하도록 보장함
- 이 워크프로그램의 준비를 위해 전략 기획의 결과는 다년 전략계획에 명시되어야 하며, 전략 계획은 최대 4년까지 커버할 수 있음
  - 전략계획은 특히 필라2를 다루나, 다른 필라 및 WID-ERA의 관련 활동 역시 커버할 수 있음
  - 집행위는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조기 관여 및 넓은 교류를 보장해야 하며, 또한 이는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되도록 보장해야 함

### □ HE 전략계획 2021-2024 구조<sup>22]23]</sup>

o 전략계획은 'HE 이행 특정 프로그램 설립 결정' 제6조 3항에 따라 해당 결정의 부록 1과 일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а	핵심전략방향(KSO), 기대파급효과, 클러스터 간 교차 이슈, 커버되는 개입영역
b	유러피안 파트너십 제시
С	EU 미션 제시
d	국제협력 (다른 국가의 R&I 활동과 일치되어야 할 액션, 제3국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수행되어야 할 액션)
е	특정 이슈 (성평등, 연구윤리 및 무결성, 인문사회과학 통합 등)

- 전략계획은 집행위의 이행법안으로써 채택되어야 하며, 따라서 프로그램 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

<sup>21)</sup>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1122

<sup>22)</sup> https://op.europa.eu/en/web/eu-law-and-publications/publication-detail/-/publication/c5f77da0-8c52-11eb-b85c-01aa75ed71a1

<sup>23)</sup>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3c6ffd74-8ac3-11eb-b85c-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search



### ㅇ 핵심전략방향(Key Strategic Orientations, KSO)

- 먼저, 전략계획은 EU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4개의 KSO를 설정함

KSO A	KSO B	KSO C	KSO D
	유럽 생태계 및	디지털화된	회복탄력적이고
개방형 전략적	생물다양성	기후중립,	포용적이며
자율성 촉진	복원/지속가능한	지속가능, 순환	민주적인 유럽
	천연자원 관리	경제	사회 형성

- A. 인간 중심의 기술과 혁신을 통해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주요 디지털, 활성화 및 신흥 기술, 부문 및 가치사슬의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촉진
- B. 식량 안보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 천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
- C. 이동성, 에너지, 건설 및 생산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유럽을 최초의 디지털화된 순환경제, 기후중립 및 지속가능한 경제로 만들기
- D. 보다 탄력적이고 포용적이며 민주적인 유럽 사회를 만들고 위협과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며 불평등을 해결하고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시민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ㅇ 파급 영역(Impact Areas)

- 각 KSO는 서너 개의 파급영역을 포함하며, 총 15개의 파급영역이 있음

KSO	파급영역(Impact Areas)	관련 클러스터
А	<ul> <li>경쟁력있고 안전한 데이터 경제</li> <li>핵심/신흥 기술 분야의 산업 리더십</li> <li>안전한 디지털 기술</li> <li>모두를 위한 고품질 디지털 서비스</li> </ul>	1, 2, 3, 4, 5
В	<ul><li>육지 및 바다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향상</li><li>깨끗하고 건강한 공기, 수질 및 토양</li><li>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li></ul>	1, 4, 5, 6
С	<ul> <li>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li> <li>저렴한 청정 에너지</li> <li>지속가능한 스마트 운송</li> <li>청정 순환 경제</li> </ul>	1, 4, 5, 6
D	<ul> <li>신흥 위협에 준비된 회복탄력적인 EU</li> <li>안전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EU 사회</li> <li>고품질의 접근가능한 헬스케어</li> <li>포용적인 성장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li> </ul>	1, 2, 3, 4, 5, 6



# ㅇ 기대파급효과(Expected Impacts)

- R&I가 기여하는 장기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기대파급효과는 HE의 파급력주도(impact-driven) 접근방식의 핵심 요소임
- 각 파급영역은 여러 개의 기대파급효과와 연결됨
- 전략계획은 사회적·경제적·생태학적·과학적 분야 등을 포괄하는 총 32개의 기대파급효과를 필라2의 6개의 클러스터에 따라 제시함

클러스터	기대파급효과(Expected Impacts)	
1	1.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건강 유지	
	2.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에서의 생활 및 직장 생활	
	3. 질병 해결 및 질병으로 인한 부담 감소	
	4.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헬스케어 접근 보장	
	5.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구,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의 잠재력 최대 활용	
	6.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보건 관련 산업 유지	
	7. 법치 기반 제도, 정책의 책임성·투명성·효과성·신뢰성 개선을 통해 민주적 거버	
	넌스 활성화	
2	8. 문화유산, 예술, 문화·창작 부문의 잠재력 최대화	
	9. 사회·경제적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10. 코로나19 대응 포함 고용, 교육, 사회적 공정석 및 불평등에 대한 증거 기반 정책을	
	통한 포용적 성장	
3	11. 재해 위험 감소 향상	
	12. 항공·육지·해상 국경 관리 및 해안 보안 개선	
	13. 범지와 테러리즘, 인프라에 대한 위협 대처	
	14. 사이버보안 강화 및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	
	15. 기후 중립적이고 깨끗한 산업 가치사슬, 순환 경제, 기후 중립적인 디지털 시스템	
	및 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16. 원자재 공급 보안과 함께 주요 전략적 가치 사슬에서 산업 리더십 및 자율성	
	10. 현사세 중립 포인과 함께 무표 한국력 가지 자들에서 한법 다니답 및 자율당     증가	
4	- ㅇ´'   17.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이고 안전하며 역동적인 데이터 경제	
	17. 년 대개 디그도 대디디어도 년년에 다 다양되면 대하다 당세   18. 디지털 기술 및 미래 신흥 기술의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	
	19. 글로벌 우주 기반 인프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개발·배포·활용 하는	
	데 있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20.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인 디지털 및 산업 기술의 발전	
	21. 기후 중립적이고 탄력적인 경제·사회로의 전환	
	22. 에너지 및 운송 부문의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전환	
	23.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공급	
5	24.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25. 기후 중립적이고 친환경적인 운송	
	26. 안전하고, 스마트하고, 포용적이고, 탄력적이며, 기후중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송	
	시스템	
6	27. 기후 중립 및 기후 변화 적응	
	28.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 및 복원	



클러스터	기대파급효과(Expected Impacts)	
	29.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관리, 오염 문제 해결, 바이오경제	
	30.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통해 모두를 위한 식량 및 영양 안보	
	31. 농촌, 해안 및 도시 지역의 균형 잡힌 개발	
	32. 지속가능성, 환경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	

# ○ 개입영역(Areas of Intervention)

- 전략계획에서 언급되는 개입영역은 HE 이행 특정 프로그램 설립 결정 (EU)2021/764 부록1<sup>24)</sup>에 설명되어 있음

클러스터	개입영역(Areas of Internvetion)		
	1.2.1. 삶 전반에 걸친 건강		
1	1.2.2. 환경적·사회적 건강 결정 요인		
	1.2.3. 비전염성 질병 및 희귀 질환		
	1.2.4. 빈곤 관련 질병 및 소외 질병을 포함한 전염병		
	1.2.5. 맞춤형 의료를 포함한 건강 및 관리를 위한 도구,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		
	1.2.6. 헬스케어 시스템		
	2.2.1.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2	2.2.2. 문화, 문화유산 및 창의성		
	2.2.3. 사회·경제적 변화		
	3.2.1. 재해에 회복탄력적인 사회		
3	3.2.2. 보호 및 보안		
	3.2.3. 사이버보안		
	4.2.1. 제조 기술		
	4.2.2. 양자 기술 포함 핵심 디지털 기술		
	4.2.3. 신흥 기술		
	4.2.4. 첨단소재		
4	4.2.5.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4.2.6. 차세대 인터넷		
	4.2.7. 첨단 컴퓨팅 및 빅데이터		
	4.2.8. 순환 산업계		
	4.2.9. 저탄소 및 깨끗한 산업 4.2.10. 지구 관측 포함 우주		
	5.2.1. 기후 과학 및 솔루션		
	5.2.1. 기구 파틱 및 글푸션   5.2.2. 에너지 공급		
	5.2.3. 에너지 시스템 및 그리드		
	5.2.4. 건물 및 산업 시설의 에너지 전환		
5	5.2.5. 커뮤니티 및 도시		
	5.2.6. 운송부문의 산업 경쟁력		
	5.2.7. 깨끗하고 안전하며 접근가능한 운송 및 이동성		
	5.2.8. 스마트 모빌리티		
	5.2.9. 에너지 저장		

<sup>24)</sup>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1D0764



클러스터	개입영역(Areas of Internvetion)	
	6.2.1. 환경 관측	
	6.2.2. 생물다양성 및 천연자원	
	6.2.3. 농업, 임업 및 농촌지역	
6	6.2.4. 바다, 해양 및 내수	
	6.2.5. 식품 시스템	
	6.2.6. EU 바이오경제 내 바이오기반 혁신 시스템	
	6.2.7. 순환 시스템	

### ○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 국제협력은 HE 전반에 걸쳐 공통 우선순위로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 하고 4개의 KSO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임
- 국제협력 액션은 상호주의와 높은 EU 표준, 가치 및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은 EU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략적 기술 영역, 핵심 인프라 및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에서 EU의 주권에 기여하도록 설계될 것임
- 국제협력에 대한 HE의 접근방식은 주요 제3국 파트너와의 타겟 액션과 결합된 다자주의와 개방성으로 구성됨
- HE에 대한 준회원국 가입은 국제협력의 가장 강력한 형태임
- 국제협력 접근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방향이 포함됨
  - (공동 연구 및 혁신 이니셔티브) EU 미션 및 유러피안 파트너십을 포함한 모든 클러스터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전략적 영역에서 주요 제 3국 및 지역의 파트너와의 타켓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 등
  - (프론티어 연구 내 국제 이동성 및 협력) 특히, 필라1&3에서의 활동을 통한 뇌 순환 및 EU 혁신 기업의 국제화 지원
  - (다자간 동맹 내 EU 참여 및 리더십) 연구 및 관찰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및 공유, 유럽 국가와 제3국 간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 고려
  - (제3국 및 지역과의 정책 대화) 오픈 사이언스 정책, 연구 윤리 및 무결성, 안전 및 품질 표준과 소재의 수명 주기 평가, 제조 규제 상황,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접근방식 개발을 포함하여 R&I에 대한 협력을 전략적 수준에서 강화



# ○ 수평적 주제(Horizontal Topics)

- 전략계획은 HE 전체에 걸쳐 고려되어야 할 8개의 수평적 주제를 제시함

양성평등 및 포용성	연구 윤리 및 무결성	연구결과의 배포 및 활용 (D&E)	인문사회과학 (SSH)
오픈 사이언스 관행	핵심지원기술 (KET)	사회 혁신	EU 택소노미

※ 핵심지원기술(KET)은 첨단소재 및 나노기술, 광자 및 마이크로/나노 전자, 생명과학 기술, 첨단제조 및 공정, 인공지능, 디지털 보안 및 연결 기술 등 6개 기술을 뜻함

# ㅇ 유러피안 파트너십(European Partnership)

- 전략계획은 다음과 같은 Co-funded 및 Co-programmed 유러피안 파트너십을 제시하였음(총 29개)
- ※ 이러한 파트너십 영역은 워크프로그램 채택 시점의 선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워크프로그램에 반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부문은 파트너십이 아닌 일반 콜을 통해 다루어지게 됨

0.5.1.1	0 0
Co-Funded	Co-Programmed
European Partnerships	European Partnerships
Risk Assessment of Chemicals	Artificial Intelligence, Data and Robotics
ERA for Health	Photonics
Transformation of Health Care Systems	Made in Europe
Personalised Medicine	Clean Steel - Low Carbon Steelmaking
Rare Diseases	Processes4Planet
One Health / Antimicrobial Resistance (AMR)	Globally Competitive Space Systems9
Driving Urban Transitions to a Sustainable Future	Connected, Cooperative and Automated
Clean Energy Transition	Mobility (CCAM)
Accelerating Farming Systems Transition: Agroecology	Batteries: Towards a competitive
living labs and research infrastructures	European industrial battery value chain
Animal Health and Welfare	Zero-emission Road Transport (2ZERO)
Agriculture of Data	Zero-emission Waterborne Transport
Rescuing Biodiversity to Safeguard Life on Earth	People-centric Sustainable Built
a Climate Neutral, Sustainable and Productive	Environment (Built4People)
Blue Economy	European Open Science Cloud (EOSC)
Safe and Sustainable Food Systems for People, Planet	Co-Funded or Co-Programmed (TBD)
and Climate	
Water4all: Water security for the planet	Pandemic Preparedness
Innovative SMEs	



### ○ EU 미션(EU Missions)

- 전략계획은 미션 이사회(Mission Boards)가 제공한 조언에 따라 5가지 미션을 제시함
  - Cancer
  - ·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 · Ocean Seas and Waters
  - · Climate Neutral and Smart Cities
  - · Soil Health and Food

# □ HE 워크프로그램(Work programme)이란?<sup>25)</sup>

#### ○ HE 워크프로그램은 HE 내 펀딩 기회를 제시함

- HE는 집행위가 이행법안으로써 채택한 워크프로그램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며, 워크프로그램은 전략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기대파급효과를 명시해야 함
- 워크프로그램은 각 액션에 할당된 예산, 우선순위, 선정 기준, 최대 펀딩 비율 및 최대 적격 비용, 수혜자의 추가 의무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함

#### ○ HE 메인 워크프로그램

- 메인 워크프로그램은 ERC, EIC, JRC 등을 제외한 모든 워크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13가지 워크프로그램으로 구성됨

<ol> <li>General Introduction</li> <li>MSCA</li> <li>Research Infrastructure</li> <li>Cluster 1</li> <li>Cluster 2</li> <li>Cluster 3</li> </ol>	8. Cluster 5 9. Cluster 6 10. EIE 11. WID-ERA 12. Missions
	13. General Annexes
7. Cluster 4	10. General Allinoxes

- General Introduction은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및 배경, 전략계획이 워크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방식 등을 설명함
- 부록은 지원 자격 규칙, 지원서 제출 방법, 집행위 서비스의 지원서 평가 방법과 같은 워크프로그램 콜에 적용되는 일반 조건을 명시함

#### ○ 도달목표(Destinations)

- 전략계획의 기대파급효과는 워크프로그램에서 도달목표로 나타남

<sup>25)</sup> https://research-and-innovation-eccurpases/funding/funding-graphoticities/funding-programmes-and-pen-cells/forizon-europe/funding-



클러스터	도달목표(Destinations)
1	1.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건강 유지 2.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에서의 생활 및 직장 생활 3. 질병 해결 및 질병으로 인한 부담 감소 4.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고품질 헬스케어 접근 보장 5.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구, 기술 및 디지털 솔루션의 잠재력 최대 활용 6.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보건 관련 산업 유지
2	<ul> <li>민주주의 및 거버넌스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li> <li>유럽문화유산 및 문화창작산업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li> <li>사회·경제적 전환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li> </ul>
3	<ul> <li>범죄와 테러리즘으로부터의 EU 및 시민 보호</li> <li>EU 외부 국경의 효과적 관리</li> <li>회복탄력적인 인프라</li> <li>사이버보안 강화</li> <li>재해에 회복탄력적인 유럽 사회</li> <li>안보 연구혁신 강화</li> </ul>
4	1. 기후중립적이고 순환적이며 디지털화된 제조 2. 회복탄력적인 산업을 위한 핵심 전략적 가치사슬 내 자율성 강화 3. 세계를 선도하는 데이터 및 컴퓨팅 기술 4. 그린딜 및 경쟁력을 위한 디지털 및 신흥 기술 5.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 글로벌 우주 기반 인프라·서비스·애플리케이션·데이터의 개발·보급·사용 6. 인간 중심적이며 윤리적인 디지털 및 산업 기술의 개발
5	<ul> <li>기후 중립 전환을 위한 기후 과학 및 대응</li> <li>기후 변화를 위한 교차 부문 솔루션</li> <li>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경쟁력있는 에너지 공급</li> <li>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에너지 사용</li> <li>모든 운송을 위한 깨끗하고 경쟁력있는 솔루션</li> <li>승객 및 상품을 위한 안전하고, 회복탄력적인 운송 및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li> </ul>
6	<ul> <li>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li> <li>생산부터 소비까지 공정하며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식품 시스템</li> <li>순환 경제 및 바이오경제 부문</li> <li>깨끗한 환경 및 오염제로</li> <li>기후행동을 위한 토지, 해양 및 수자원</li> <li>그린딜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환경 관측 및 디지털 솔루션</li> </ul>

- ※ 워크프로그램의 도달목표는 전략계획에서 언급된 기대파급효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각 도달목표는 워크프로그램 2021-2022와 2023-2024에서 동일하게 나타남
- 각 도달목표에 따라 여러개의 과제공고(Call)가 이루어지며, 각 과제 공고에는 여러 주제(Topics)가 포함되어 있음

# 5 그랜트 협약(Grant Agreement)

# □ 그랜트 협약(Grant Agreement)이란?

- 그랜트 협약은 수혜자(단일 법인 혹은 컨소시엄)와 집행위원회(펀딩 기관)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뜻함
  - ※ 모든 EU 그랜트 협약은 'EU 일반 그랜트 협약서 모델'을 기초로 함
  - 그랜트 협약 모델(MGA)에는 44개 조항이 있으며 이에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액션 및 그랜트에 관한 일반 약관이 포함됨

# □ MGA 구성 및 주요 내용

- 협약서는 서문, 약관(데이터 시트 포함), 부록 5개로 이루어짐
  - 약관에는 44개의 조항이 있으며, 이는 총 6개의 장으로 나뉘어짐

제1장 일반		
제 1 조 주 제	▶ 제1조: "본 협약서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랜트의 사용	
제2조 정의	목적과 조건을 설정함"	

제2장 액션		
제3조 액션	<ul><li>▶ 제3조에는 협약서를 통해 그랜트를 수여받을 액션의 '프로 젝트 번호'와 '프로젝트명'을 명시</li></ul>	
제4조 기간 및 시작 일자	<ul><li>▶ 제4조: "액션의 기간 및 시작 일자는 데이터시트에 명시됨"</li><li>※ 데이터시트는 협약서의 '서문 및 목차'와 '제1장 일반사항'</li><li>사이에 작성되며, 액션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명시함</li></ul>	

제3장 그랜트		
제5조 그랜트 제6조 적격/비적격 비용 및 기여	<ul> <li>제5조는 그랜트의 형태, 상한액, 펀딩 비율, 추정 예산, 예산 카테고리 및 펀딩 형태, 예산 집행의 유연성 등을 정의함</li> <li>제6조는 어떠한 비용 및 기여에 그랜트가 제공되는지를 명시하므로 본 조항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는 비용만 상환할 수 있음</li> </ul>	



제4장 그랜트 이행 (섹션1: 컨소시엄)		
제7조 수혜자(BEN)	▶ 제7조는 그랜트 수혜자 별 역할, 책임, 의무사항 등을 명시	
제8조 협력 기관(AE)	<ul><li>▶ 제8조는 협력기관(AE)에 대한 내용을 다룸</li><li>▶ 제9조는 파트너기관(AP), 현물 기여하는 제3자, 위탁기관 등</li></ul>	
제9조 기타 참여자	액션에 참여하는 기타 참여자를 다룸  ▶ 제10조는 비EU 참여자, 국제기구, Pillar-assessed 참여자 등	
제10조 특별 참여자	특수 참여자를 다룸	

·		
제4장 그랜트 이행 (섹션2: 액션 수행 규칙)		
제11조 적절한 이행	▶ 제11조는 수혜자가 협약서 조항, 콜 조건 및 해당 EU 국제/ 국내법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를 지키며 부록1에 기술된 액션을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며, 수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랜트가 줄어들거나 5장에 기술된 다른 조치가 취해질	
제 12조 이해 상충	수 있음을 명시함  ▶ 제12조는 정치적, 경제적, 감정적 일이나 가족, 국가 문제 등으로 협약의 이행에 지장이 가서는 안됨을 명시	
제13조 기밀 및 보아	▶ 제13조는 당사자가 동의한 '민감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의무, 처리 방식 및 절차 등을 명시	
	▶ 제14조는 수혜자가 부록5에 명시된 윤리적 기준에 따라 액 션을 수행하고, 기본 EU 가치를 보장하고 지켜야함을 명시	
제14조 윤리 및 가치	▶ 제15조는 연구비 지원 당국과 수혜자가 개인정보를 데이터 보호에 관한 EU/국가/국제법에 따라 책임감 있게 처리할 것 을 명시	
제 15조 데이터 보호	▶ 제16조는 '배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 결과물 소유권, 정보 사용권 등을 다룸	
제 16조 지 식 재 산권(IPR)	※ 배경(background): 지식재산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해 형태나속성(유형/무형)에 관계없이 협약 체결 전에 수혜자가보유하였으며, 액션을 수행하거나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필요한 모든 데이터, 노하우 또는 정보를 의미	
제 17조 커뮤니케이션, 배포	<ul> <li>제17조는 수혜자가 부록1에 따라 일관성 있으며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대상에게 핵심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액션 및 액션의 결과물을 홍보해야 함을 명시</li> </ul>	
및 표기	※ 또한, 수혜자는 모든 배포 자료 및 그랜트로 조달한 인프라, 장비, 차량, 공급품 또는 주요 결과물에 EU 지원 사실을	
제18조 액션 수행 특정 규칙	명시하고 유럽기와 펀딩성명을 삽입해야 함  M18조는 액션 수행 시 지켜야 할 특정 규칙을 부록5에 명시하도록 지시함	



제4장 그랜트 이행 (섹션3: 그랜트 행정)		
제19조 일반정보 의무사항	▶ 제19조는 수혜자가 요청된 정보, 자신의 최신 정보(주소, 법적 대리인 등)를 제공하고, 액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제20조 기록 보관	발생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제21조 보고	<ul> <li>▶ 제20조는 수혜자가 액션을 적절하게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기록 및 기타 증빙 서류의 종류와 이를 보관해야 할 의무기 있음을 명시</li> <li>▶ 제21조는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액션의 진행상황을 포털을 통해 보고하고, 기술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했다.</li> </ul>	
제22조 지불 및 회복		
제 23조 개 런 티	보고해야 함을 명시 ▶ 제22조는 그랜트 지급 절차와 지급 방식, 지급 금액 계산 방법 등을 설명	
제 24 조 증 명 서	<ul> <li>▶ 제24조: 연구비 지원 당국이 요구할 경우 수혜자는 재무제증명서(CFS) 등을 제공해야 함</li> <li>▶ 제25조는 액션 기간 동안 내부 확인, 프로젝트 검토, 김및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li> <li>▶ 제26조는 EU 펀딩 프로그램의 목표 및 지표에 따라 액션파급력(impact)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li> </ul>	
제25조 확인, 검토, 감사 및 조사		
제26조 파급력 평가		

제5장	위반시 영향 (섹션1: 거부 및 그랜트 축소)
제27조 비용 및 기여의 거부	
제28조 그랜트 축소	_

제5장 위반시 영향 (섹션2: 중지 및 종료)		
제29조 지불 기한 연기	<ul> <li>▶ 제29조는 요구되는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 EU의 재정적 이익에 상충되는 경우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이 그랜트 지불 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을 명시</li> <li>▶ 제30조는 특정 조건에 해당될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이수혜자에 대한 그랜트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을 명시</li> </ul>	
제30조 지불 중지		
제31조 그랜트 협약 중지		
제32조 그랜트 협약 또는 수혜자 종료	<ul> <li>▶ 제31조: 수혜자가 액션의 수행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GA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li> <li>▶ 제32조는 컨소시엄 또는 EU 요청 하에 GA 및 특정 수혜자 (들)를 종료할 수 있는 조건 및 절차를 명시</li> </ul>	



# 제5장 위반시 영향 (섹션3: 기타 영향: 피해 및 행정적 제재) 제33조 기타 영향: 피해 및 행정적 제재) 지33조 기타 영향: 피해 및 행정적 제재) 지33조는 연구비 지원 당국이 '수혜자가 협약 이행 중에 입은 피해' 혹은 '액션에 관여된 수혜자나 참여자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한편, 수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해 연구비 지원 당국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해야 함을 명시 제34조는 협약서 내용 위반 시 행정적 제재나 기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고히 함

제5장 위반시 영향 (섹션4: 불가항력)

제35조 불가항력	▶ 제35조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당사자의 경우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명시
	제6장 최종 조항
제36조 당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제37조 협약서의 해석	
제3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법	
제39조 개정	
제40조 새로운 수혜자의 가입 및 추가	<ul><li>▶ 제37조는 협약서의 해석 시 어떤 항목이 우선시되는지를 명시</li><li>▶ 제39조는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설명</li></ul>
제41조 협약서의 이전	
제42조 연구비 지원 당국에 대한 청구권 부과	
제43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제 44조 시 행	



- 5개의 부록은 각각 다음을 다룬

부록	비고
부록1 액션 설명	
부록2 추정 예산	
부록3 수혜자 가입양식 (3a 연대책임신고서)	▶ 부록5는 기밀 및 보안, 윤리, 가치, 지식재산권, 커뮤니케이션, 배포, 오픈사이언스, 연구원 근무 및 채용 조건 등 각 조항에 대한 특정 규칙을 명시함
부록4 재정보고모델	
부록5 특정 규칙	

# □ Annotated Model Grant Agreement(AGA)란?

- o AGA는 EU 보조금 협약에 사용되는 '그랜트 협약서 모델(MGA)의 각 항목에 대한 주석을 달아 설명하는 문서임
  - 집행위는 사용자에게 MGA의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AGA를 제작하고 있으며, 최신 버전은 지난 4월 발간된 AGA 초안 1.0 버전26)으로 약 400페이지에 달함
  - 한편, 한-EU연구협력센터(KERC)는 AGA 사전 초안 0.2 버전<sup>27</sup>)(약 180 페이지)의 한글판<sup>28</sup>)을 제작한 바 있음
  - ※ 참고: AGA 사전 초안 한글판의 내용 요약 보고서 초안<sup>29)</sup>

<sup>26)</sup>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docs/2021-2027/common/guidance/aga\_en.pdf

<sup>27)</sup> https://k-erc.eu/wp-content/uploads/2023/07/EU-Grants-AGA-Annotated-Model-Grant-Agreement-V0.2-DRAFT-30.11.2021.pdf

<sup>28)</sup> https://k-erc.eu/wp-content/uploads/2023/07/KERC-AGA-V0.2-Draft-%ED%95%9C%EA%88%80-%EB%82%88%EC%97%AD%EB%83%88.pdf

<sup>29)</sup> https://k-erc.eu/wp-content/uploads/2023/08/230131\_AGA-내용요약.pdf

# III. Horizon Europe 시스템 및 제도

# 1 HE 연구주제 기획 시스템

### □ 개요

HE의 연구 주제는 워크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되며, 워크프로그램은HE 전략계획에 따라 만들어짐

### □ HE 전략계획 수립

- ① 그림자 프로그램 위원회 집행위 전문가 그룹
  - 집행위원회의 연구혁신총국(DG RTD)은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및 조언을 제공받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고 있음
  - 이러한 전문가 그룹은 22개의 서브그룹을 통해 HE 각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 일반적으로 HE 전문가 그룹은 각 회원국 대표로 이루어지며, 이외에 개별 전문가나 제3국 당국 등도 (초청하에) 회원 혹은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있음

#### ② 공공 의견수렴

- HE의 전략 계획은 공동 설계(co-design)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해관계자 및 시민이 전략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 집행위는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해당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관련 분석 보고서를 제작하고, 전략계획에 반영하게 됨
- ※ 예를 들어, 지난 '22년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HE 전략계획 2025-2027 공공 의견수렴에서 향후 연구혁신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에는 총 2,258명이 응답하였으며, 108개의 입장서가 제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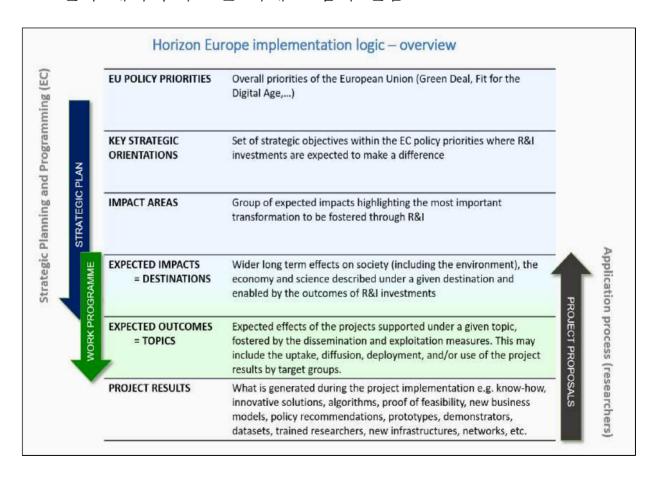
### ③ 프로그램 위원회

- 위의 과정을 거쳐 집행위가 준비한 전략 계획 초안은 마지막으로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프로그램 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됨
- 프로그램 위원회는 집행위가 의장을 맡고, 회원은 EU 회원국 및 HE 준회원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결권은 EU 회원국 회원만 가짐



#### □ HE 연구주제 기획 구조

- ㅇ HE는 파급력기반(Impact-Driven)으로 이루어짐
  - HE는 집행위의 정책 우선순위에 기여하고 연구혁신투자의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 파급력기반으로 설계됨
  - ※ 이전 프로그램(H2020)은 활동기반(activity-driven)으로 이루어져왔음
  - 파급력 기반 접근 방식은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워크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옴
  - 따라서 전략계획에서 '기대파급효과(Expected Impacts)'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이며, 이는 워크프로그램에서 '도달목표(Destinations)'와 이를 달성 하기 위해 핵심적인 관련 '기대결과(Expected Outcomes)'가 다양한 '주제 (Topics)'로써 워크프로그램에 반영됨
- o HE 전략 계획의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음





#### 1. HE 전략 계획

### ① 핵심전략방향(KSO)

- 전략계획은 EU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4개의 핵심전략방향(KSO)을 설정함

### ② 파급 영역(Impact Areas)

- 각 KSO에 따라 서너 개씩 총 15개 파급영역이 제시됨
- 각 파급영역에는 여러 개의 기대파급효과가 포함됨

### ③ 기대파급효과(Expected Impacts)

- 전략계획은 R&I 결과의 장기적인 효과를 설명하는 총 32개의 기대 파급효과를 제시함
- ※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기대파급효과는 워크프로그램에서 도달목표로 나타남



#### 2. HE 워크프로그램

#### ④ 도달목표(Destinations)

- 도달목표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경제적 도전과제와 R&I 활동이 기여하게 될 기대파급효과를 설명함
- 각 도달목표에는 여러 개의 과제공고(Call)가 포함됨

## 3. 과제공고(Calls for proposals, Call)

※ 과제공고(Call)는 지원서 제출을 위한 공모 기한을 공유하는 여러 주제 (Topics)들의 집합으로, 각 공고는 개별 조건을 제시함

## ⑤ 주제(Topics)

- 주제는 지원받아야 할 R&I 활동의 범위와 그 기대결과를 설명하며, 각 주제는 일반 조건, 기한, 예산 및 특정 조건 등을 명시함



- 기대결과(expected outcomes)는 프로젝트 결과의 활용, 확산, 활용 및 배포 등 중기적으로 프로젝트의 희망 효과를 말함
- 범위(Scope)는 기대결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R&I가 다루어야 할 영역을 설명함
- ※ 한편, 범위는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으므로, 기대파급효과 및 기대결과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은 지원자의 창의성과 기술에 달려있음

### □ 공동사업단(JU)의 연구 주제 기획 시스템

# o 공동사업단(Joint Undertakings)이란?30)

- 공동사업단(JU)는 유러피안 파트너십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제도화된 (기관화된) 파트너십(Institutionalised partnership)을 뜻함
- 이는 다른 유형의 파트너십이나 프로그램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EU-회원국-산업계 등) 파트너십임

#### o JU 운영체계

- JU는 일반적으로 운영 이사회(GB), Executive Director(ED), 회원국 대표그룹(SRG), 이해관계자그룹(SG)로 구성됨
- 운영이사회는 JU의 최종 결정권자로, 파트너십의 장기적인 전략적 방향성 및 연례 우선순위 등을 결정함
- 이사회의 의장은 EU 대표(50%), 산업계 대표(50%)로 구성됨
- ED(Executive Director)는 JU의 법적 대표이며, 운영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JU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함
- ED는 JU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하에 **프로그램 사무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음
- **회원국대표그룹**은 경우에 따라 회원국 및 HE 준회원국 대표 그룹 두 개로 구성됨
- 이는 이해관계자그룹과 더불어 자문 기관으로 활동하며, JU의 진전과 성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sup>30)</sup> https://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ST-12156-2021-INIT/en/pdf



- 이들은 운영이사회에 주기적으로(매년 말) 국가나 지역 수준의 R&I 프로그램 등을 보고하여 JU가 다른 국가/지역 수준의 프로그램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자그룹은 JU와 관련된 분야에 활동 중인 조직이나, 회원국, 준회원국 및 제3국 내 국제관심그룹 등 모든 대중과 민간 이해관계자에게 열려있음
- 운영이사회는 이해관계자그룹의 구성이나 선정 절차, 특정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정학적 분포나 젠더, 전문 분야 및 대표성 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
- 이해관계자그룹은 JU가 해결해야할 전략적 기술적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부문과 구체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언을 제공함

#### ㅇ 전략적 연구혁신 의제(SRIA)

- 이는 각 파트너십의 최종 결정권자인 운영이사회가 채택하며, 연간 워크 프로그램(AWP)의 방향성을 제시함
- SRIA는 JU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우선순위, 기술 및 혁신을 식별하며, AWP는 연간 예산을 기반으로 이를 이행
- JU뿐만 아니라 기타 파트너십(Co-funded, Co-programmed)에서도 다중 이해관계자(연구기관, 대학, 국가/지역당국, 산업계, 공공기관 등)의 공동설계 과정을 통해 SRIA를 작성함



# 2 HE 과제 평가 시스템

# □ 표준 평가절차

- o HE 프로그램은 표준 평가제도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
  - 제안서는 독립적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에 의해 이루어짐



Individual evaluation	Consensus Group	Panel Review	Finalisation
개별평가	그룹평가 (의견조율 및 협의)	패널평가	결과검토 및 최종순위목록 작성
<ul> <li>서면평가</li> <li>평가위원은 최소 3인으로 구성</li> <li>평가기준에 따라 평가</li> <li>타인과의 논의 금지</li> </ul>	개별평가에서 제시한 내용(평가 점수 등)에 대한 공동의견 도출을 위한 전문가 협의	그룹평가 결과(평기점수, 의견에 대한 협의, 일관성 점검 및 동일점수에 대한 순위 지정 등	EU 집행위원회 및 집행 기관은 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순위 목록을 작성

※ 평가는 대부분 원격으로 진행되나, 평가자를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 건물로 초대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음

# ① 지원서의 허용성 및 적격기준 등은 EU 직원이 검토함

- (허용성) 지원서가 완전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 등을 갖추었는가? 지원서가 읽을 수 있으며, 접근가능하고, 프린트 가능한가? 지원서가 결과 활용 및 배포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는가? 액션 별로 정해진 페이지 수 제한을 지켰는가? 등
- (적격성) 지원서 내용이 제안요청 조건에 부합하며, 최소 파트너 수를 지키고 있는가? 성평등계획(GEP)을 갖추었는가? 등



### ② 개별평가(Individual evaluation)

- 평가위원은 타인과의 논의 없이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읽고 평가한 후 개인평가보고서(IER)을 작성하여 전자시스템에 탑재함
- ※ 평가위원은 IER에 각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와 의견을 기술하며, 제안의 결점을 설명하되 권장사항을 제시해서는 안됨
- 평가 점수는 각 평가 기준\*당 5점\*\*씩 총 15점으로 구성됨

#### \* HE 제안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HE 설립 규정 제28조)

- (a) Excellence (우수성/탁월성)
- (b) Impact (파급력/영향력)
- (c) 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implementation (연구의 질 및 과제 수행의 효율성)
  - ※ 오픈사이언스 관행 역시 우수성 기준의 일부로 평가됨
  - ※ 프론티어 연구를 지원하는 ERC의 경우는 (a)항목만을 기준으로 평가함
  - ※ 한편, 성공적인 제안서는 추후 윤리 검토를 받게되어 있으므로 독립 전문가는 평가 시제안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없음
- 각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각 과제공고(call)의 목표에 따라 워크프로그램을 통해 제시됨
- 적절한 경우 집행위나 펀딩기관은 2단계(two-stage) 제출 및 평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음

#### \*\* 평가 점수별 의미

- 0점: 제안이 해당 기준을 다루는 데 실패하였거나, 정보의 누락/부족으로 인해 평가할 수 없음
- 1점(Poor): 해당 기준이 적절하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거나, 제안에 심각한 내재적 결함이 있음
- 2점(Fair): 제안이 해당 기준을 대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제안에 상당한 결함이 있음
- 3점(Good): 제안이 해당 기준을 잘 다루고 있으나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
- 4점(Very Good): 제안이 해당 기준을 매우 잘 다루고 있으나,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음
- 5점(Excellent): 제안이 해당 기준의 모든 측면을 성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결점도 매우 작음

# ㅇ 지원자 대응권한(Right to react) 과정을 포함하는 평가절차

- 지원자 대응권한은 개별평가와 그룹평가 사이에 추가단계로 구성됨
- 콜 조건에 명시된 경우 지원자는 개별평가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개별 평가 보고서는 Funding and Tenders Portal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어 신청자에게 평가자가 작성한 초기 진술에 대해 논평할 수 있는 제한된 창을 제공
- 그러나 지원자는 정보를 보완하거나 추가하여 제출할 수 없음
- ※ 이 절차의 주요 목적은 지원자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
- ※ 현재 해당 절차는 주로 필라3의 유럽혁신위원회(EIC) 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음



## ③ 그룹평가(Consensus Group)

- 그룹평가는 일반적으로 개별평가 결과에 기초한 논의가 포함되며, 평가 의견과 점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해당 협의 과정은 주로 EU 직원에 의해 조정되며, 일부 경우에는 전문가 중 한 명이 조정을 담당하게 됨
- 보고자는 일치된 평가 의견 및 점수를 담은 의견일치보고서(CR) 초안을 작성을 담당함
- ※ 일부 경우에는 보고자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CR은 지원자에게 평가결과와 함께 송부될 평가요약보고서(ESR)의 기초가 됨
- ※ 대부분의 경우 패널평가단계까지도 CR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ESR은 CR과 동일할 때가 많음
- CR은 제안의 장점에 대한 명확한 평가, 제안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 결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④ 패널평가(Panel Review)

- 패널평가의 패널은 그룹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그리고/혹은 새로운 전문가들로 이루어짐
- ※ 해당 논의는 주로 EU 직원에 의해 조정되며, 일부 경우에는 전문가 중 한 명이 조정을 담당하게 됨
- 패널평가는 그룹평가 단계에서 주어진 평가 의견과 점수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하며 각 제안에 대한 최종 평가 의견과 점수를 승인함
- 패널평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서 목록을 작성함
  - ※ 같은 점수를 가진 서로 다른 제안의 경우 다음에 따라 순위를 매김:
  - 1. 더 우수한 점수를 받은 제안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루는 제안
  - 2. 일반적으로는 Excellence-Impact 순으로 점수가 우선시 되며, 혁신 액션의 경우는 Impact가 최우선시됨
  - 3. 필요한 경우, 제안에 언급된 인력의 성균형이 좋은 제안이 우선시됨
  - 4. 필요한 경우, 지리적 다양성이 높은 제안이 우선시됨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다른 요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김(예: 프로젝트 간 시너지, SMEs 포함 여부 등)



- 패널평가는 제안을 발표하도록 지원자를 초청하여 진행할 수 있음

# □ 평가위원 구성 및 지원방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Pool)
  - 집행위는 연구 수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투명성, 독립성, 연구윤리 등의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들로 평가위원 풀을 구축 중
  - 관심있는 전문가는 집행위원회의 Expert's Database에 등록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각 평가에 가장 적합한 프로필을 가진 후보를 선택
  - 선정된 전문가는 2일에서 최대 2주, 경우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지속 되는 단기 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 ※ 근무일은 항상 연속적이지 않으며 수개월에 걸쳐 분산될 수도 있음
  - 평가위원 선정 시 성별, 출신 국가,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은 금지됨
  - ※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전문가의 평가위원 참여가 적극 권장됨

#### ㅇ 평가위원에는 다음 두 개의 유형이 있음

- (Thematic Expertise) 전문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 ※ 기후 과학 및 솔루션, 커뮤니티 및 도시, 운송산업 경쟁력, 에너지 포집 및 저장 등
- (Cross-cutting Expertise) 주제별 전문 지식 외의 기술과 경험을 겸비하여 공동분야와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 ※ 연구혁신 프로젝트의 재무 관리 경험, 성평등정책을 연구혁신에 통합하는 전문성 등



# 3 HE 연구결과 공개 제도

# □ 연구 결과의 활용 및 배포 의무

- o 연구결과의 파급력(Impact)
  - 파급력(Impact)은 HE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연구 활동에서 생성된 즉각적인 결과를 넘어서는 프로젝트의 광범위한 과학적,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의미
  - 컨소시엄은 과제 선정 이후 파급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프로젝트의 첫 6개월 이내 결과의 완전한 활용, 확산 및 홍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함
- ㅇ 수혜자는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
  - 활용은 수혜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결과의 이전 및 라이센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수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기한 내에 결과가 활용되지 못한 경우, 수혜자는 그랜트 협약에 따른 적절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결과를 활용할 이해관계자를 찾아야 함
- 수혜자는 가능한 즉시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형태로 배포해야 함
  - 이는 지식재산(IP) 보호, 보안 규칙 등에 따른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워크프로그램은 배포 의무와 관련한 추가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음
- 수혜자는 그랜트 협약의 약관에 따라 과학 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보장해야 함
  - 연구데이터에 대한 오픈액세스는 그랜트 협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일반 규칙임
  - ※ 해당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데이터 보호 규칙, 개인정보보호, 기밀 유지, 영업 비밀, 지식재산권, 보안 규칙, 상업적 활용 및 기타 제약을 포함한 예외적인 경우도 보장됨
  - 특히, 수혜자들은 당사자가 오픈액세스 요구사항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함



- o 수혜자는 액션을 통해 생성된 모든 연구데이터를 FAIR\* 원칙 및 그랜트 협약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데이터 관리 계획(DMP)을 수립해야 함
  - 워크프로그램은 정당한 경우 연구데이터의 저장 및 액세스를 위해 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EOSC)\*\*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 FAIR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and Re-usable data)
  - \*\* EOSC (European Open Science Cloud)31)
- ㅇ 일반적으로 제안은 결과의 활용 및 배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수혜자는 결과의 활용 및 배포와 관련하여 요청된 모든 정보를 집행위 또는 편딩기관에 제공해야 함(모니터링 및 배포 목적)
  - 이러한 정보는 수혜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따라 공개적으로 제공됨

# □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 o DMP는 연구 프로젝트 전주기 동안 데이터를 수집, 생성 및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하는 자료
  - DMP는 프로젝트에서 도출되는 연구데이터의 가용성과 유용성을 보장
  - EU가 제공하는 DMP 양식은 EU 차원에서 권장하며, 연구자는 동 양식을 활용하거나 유사 양식을 활용할 수 있음
  - ※ EU 집행위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일환으로 HE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재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DMP를 통한 연구데이터 관리를 필수요소로 지정함
- HE 연구단계별 DMP 요구사항

#### 제안서 작성 및 제출단계

- 프로젝트 제안의 일부로 간략한 DMP 초안(Initial version) 제시

#### 일부 워크프로그램에서 DMP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제안서 제출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전체 계획을 제출하거나, 늦어도 협약서 서명시까지 완전한 DMP를 제출

#### 과제 선정 시

- 협약 서명일(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수적으로 세부적인 DMP (Comprehensive DMP) 제출

#### 연구 진행 중

-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조정

<sup>31)</sup>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strategy/strategy/2000-2004/our-digital-future/open-science/european-open-science-doud-ecsc\_en



# ㅇ DMP 양식 구성

7	 <sup>1</sup> 성요소	주요 내용
	a Summary 이터개요	<ul> <li>□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설명</li> <li>● 데이터 재사용 여부, 데이터 폐기 시 이유</li> <li>● 데이터의 유형 및 형식, 예상 데이터 크기</li> <li>● 데이터 사용 목적 및 프로젝트 목표와의 관계</li> <li>● 데이터의 출처 및 유래</li> <li>● 사용될 데이터의 잠재력(프로젝트 외부)</li> </ul>
FAIR 원칙	Findable 검색가능성 Accessible 접근가능성	□ 데이터 검색 가능성(메타데이터 포함)  • 데이터 식별(영구식별자)  • 메타데이터 제공 여부 및 종류, 규범 및 표준  • 검색키워드 제공(검색 및 재사용 가능성 최적화)  • 메타데이터 수집 및 제공방식(색인화)  □ 보관소(Repository)에 대한 세부정보  • 보관소의 신뢰성  • 보관소의 품질(식별자 확인 및 디지털 개체인식 여부)  □ 데이터(Data) 자체에 대한 접근  • 접근 조항(데이터 공개사용 여부, 특정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제한 시규범 및 계약상의 이유)  • 데이터 비공개 유지(연구협약서상의 적법한 이익이나 기타 제약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 지적재산권(예. 특허) 대한 엠바고 적용이유 및 기간  • 무료 액세스 프로토콜  • 접근방법(이용제한이 있을 경우, 프로젝트 종료 중 및 종료 후)  •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 데이터 접근위원회(예. 개인/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청에 대한 평가/승인)  □ 메타데이터(Metadata) 접근성 및 가용성  • 이용허락규약(CCO)에 따른 공개사용 및 라이선스 부여 여부  • 사용자 접근 정보 포함 여부  • 메타데이터 접근을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문서
	Interoperable 상호운용 가능성	○ 상호운용성
	Reusable 재사용 가능성	<ul> <li>광범위한 재시용 보장 및 협약에 의한 표준 재사용 라이센스 사용여부</li> <li>데이터 제3자 이용 가능여부</li> <li>데이터 출처 문서화(적절한 표준 사용)</li> <li>관련 데이터 품질 보증 프로세스 설명</li> </ul>
(	er research outputs 연구결과물	□ 데이터 관리 외 기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계획 및 관리 • 디지털 결과물(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모델 등) • 물리적 결과물(신물질, 항체, 시약, 샘플 등) • 결과물에 대한 FAIR 원칙 준수 ※ 관리 및 공유, 재사용 방안 세부정보 제공



구성요소	주요 내용
Allocation of resources 자원의 배분	□ FAIR 원칙 준수를 위한 비용 및 관리자와 같은 인적자원에 대한 논의  • 데이터 및 결과물에 대한 비용 및 비용확보 방안(저장소, 보관, 재사용, 보안 등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 ※연구데이터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은 HE연구비 일부적용  • 데이터 관리 책임자  • 장기보존 및 이를 위한 리소스에 대한 논의
Data security 데이터 보안	□ 저장소(storage) 및 복구를 포함하는 데이터 보안보장  • 데이터 복구, 보안저장소(storage), 민감데이터 전송을 위한 규정 및 시행여부  • 장기보존 및 큐레이션을 위한 안전 보관소(staorage)
Ethics 윤리	□ 데이터 공유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윤리적 법적문제 제시 ※윤리검토에서 논의 • 개인정보 활용시-사전동의, 장기보존
Other issues 기타사항	□ 데이터 관리 방안 • 타국가, 자금제공자, 분야 및 부서의 절차사용 여부

# ☐ Horizon Result Platform (HRP)32)

- 어 HRP는 EU 편딩 연구혁신 프로젝트의 '주요 활용가능한 결과 (KER)'의 리포지토리임
  - ※ KER(Key Exploitable Results)은 프로젝트 파트너에 의해 선정된 활용될 잠재적 가치가 큰 주요 우선순위 결과를 뜻함
  - HRP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홍보 공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수혜자들이 연구 결과를 배포하여 관심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결을 통해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임
  - ※ HRP는 수혜자가 단일화된 안전한 환경에서 결과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Funding & Tenders Portal에서 호스팅함
  - (목적) 수혜자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유용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 (기대) 지속가능한 유럽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연구결과 활용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
  - (내용) 플랫폼은 특히 특정 요구사항, 결과의 진행상황 및 정책에 대한 영향, 프로젝트 결과의 유형 및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함
  - 게시 내용 및 범위는 집행위와 컨소시엄 간의 협약에 의해 결정됨
  - (활용) 플랫폼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연구 결과 프로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sup>32)</sup> https://ec.europa.eu/info/funding-tenders/opportunities/portal/screen/opportunities/horizon-results-platform



- ※ HE는 제3자를 통한 연구혁신 결과의 활용을 권장
- (특징) 프로젝트 종료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프로젝트 결과가 활용되지 않고 있을 경우 해당 결과를 HRP에 게시해야함
- ※ 그러나 결과가 민감한 내용이거나 이미 매우 성공적이거나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

#### o CORDIS<sup>33</sup>)와의 차이점

- CORDIS는 모든 EU 펀딩 프로젝트의 아카이브로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파트너, 목표, 예산 등)와 의무적인 출판물 및 결과를 가지고 있음
- HRP는 KER에만 집중하여 관련되거나 중요한 결과만을 게시함

#### o EEN34)과의 차이점

- HRP는 프로젝트 결과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치메이킹을 위한 공간은 아니지만,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이나 정책 기반 이니셔티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될 수 있음

#### O Horizon Results Booster<sup>35)</sup>과의 차이점

- 부스터는 프로젝트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집행위가 위탁한 컨설팅 회사의 컨소시엄을 통해 운영됨
- 부스터는 연구 결과의 배포 및 활용 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 혹은 솔루션 비즈니스 플랜 개발, 시장 진출 전략 등을 지원함
- HRP은 이러한 전략과 계획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

#### O Knowledge Valorisation Platform36)과의 차이점

- 지식가치화플랫폼은 EU 전역의 플레이어를 연결하여 유럽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실용화하는 모범 사례, 지식 및 전문 지식을 공유함
- 이는 지식 가치화와 배포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즉, 추상적인) 입증된 테크닉을 제공하는 반면, HRP는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결과를 포함함

<sup>33)</sup> https://cordis.europa.eu/

<sup>34)</sup> https://een.ec.europa.eu/

<sup>35)</sup> https://www.horizonresultsbooster.eu/

<sup>36)</sup>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research-area/industrial-research-and-innovation/eu-valorisation-pdicy/knowledge-valorisation-platformen



# 4 HE 지식재산권 제도

# □ HE 지식재산권(IPR)에 관한 MGA 조항

※ 아래 내용은 HE 그랜트 협약서 모델(MGA)의 제16조 '지식재산권 (IPR)-배경 및 결과-액세스 권한 및 사용권'을 다룸

#### ㅇ 16.1 배경 및 배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

- 수혜자는 부록 5의 특정 규칙에 따라 액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배경에 대한 액세스를 다른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함
- ※ 배경(background)은 지식재산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해 형태 또는 속성(유형 /무형)에 관계없이 1)협약서 체결 전에 수혜자가 보유한 2) 액션을 수행하거나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 노하우 또는 정보를 의미

#### ㅇ 16.2 결과물 소유권

- 연구비 지원 당국은 액션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음
- ※ 결과물(results)은 형태, 속성, 보호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데이터, 노하우 또는 정보와 같이 액션에 따른 유형/무형의 결과와 지식재산권을 포함해 액션에 속한 모든 권리를 의미

# 16.3 정책, 정보, 커뮤니케이션, 배포 및 홍보를 목적으로 연구비지원 당국이 받은 자료, 문서 및 정보 사용권

- 연구비 지원 당국은 액션 기간 또는 이후 정책 정보, 커뮤니케이션, 배포 및 홍보 목적으로 수혜자로부터 받은 액션과 관련된 민감하지 않은 정보 및 자료와 문서(특히, 출판물 요약본, 결과물을 비롯해 종이 또는 전자 형태의 사진 또는 시청각 자료와 같은 기타 자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
- 수혜자의 자료, 문서 및 정보에 대한 사용권은 다음 권리를 포함해 로열티 없는 비독점, 변경 불가능한 라이선스의 형태로 수여됨



자체 목적으로 사용	<ul> <li>연구비 지원 당국 또는 기타 EU 서비스(협회, 기관, 사무소, 에이전시 등을 포함)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EU 회원국 협회/기관에 제공하는 경우</li> <li>장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 또는 복제</li> <li>정보 배포 서비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li> </ul>
공개 배포	<ul> <li>종이/전자/디지털 형식의 출판물</li> <li>다운로드가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파일로 인터넷에 출판물 게시</li> <li>채널을 통한 광고; 공공 디스플레이 또는 프레젠테이션</li> <li>정보 배포 서비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li> <li>광범위하게 액세스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색인에 포함</li> </ul>
편집 또는 수정	<ul> <li>단축, 요약, 기타 요소 삽입(예: 메타데이터, 범례, 그래픽, 시청각 또는 텍스트)</li> <li>일부 발췌(예: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li> <li>부분 분할, 편집에 사용</li> </ul>
번역	• (빈칸)
저장	• 종이, 전자 또는 기타형태로 저장
보관	• 해당 문서 관리 규칙에 따라 보관
제3자에 대리행위 권한 승인	• 제3자에게 대리행위를 승인할 권리 또는 (연구비) 지원 당국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요 사항 (b), (c), (d), (f)에 명시된 사용 방식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권리
이차 저작물 창작	• 받은 자료, 문서 및 정보의 처리, 분석, 집계 및 이차 저작물 창작

- 사용권은 관련 공업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 전체기간 동안 수여됨
- 자료 또는 문서에 저작인격권 또는 제3자 권리(지식재산권 또는 이미지 및 음성에 대한 자연인의 권리 포함)가 적용되는 경우 수혜자는 본 협약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특히, 해당 권리자로부터 필요한 라이선스 및 허가를 획득해야 함)
- ※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 당국은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함: "(c)-[연도]-[저작권 소유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조건에 따라 [연구비 지원 당국의 이름]에 라이선스 허가."

#### ○ 16.4 IPR, 결과물 및 배경에 대한 특정 규칙

- 지식재산권, 결과물 및 배경(있는 경우)과 관련된 특정 규칙은 부록 5에 명시하도록 함

#### ㅇ 16.5 위반 시 결과

- 수혜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랜트가 삭감될 수 있으며,(28조 참조) 위반으로 인해 5장(chapter 5)에 기술된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HE 지적재산권 시스템

※ 참조: HE 설립 규정 제38조 및 제40조 / MGA 제16조

#### ㅇ 결과물은 결과물을 생성한 수혜자 소속 기관이 소유

- 연구비 지원 당국은 액션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음
- 결과물에는 액션에 따른 유형 결과물(예: 데이터, 유형, 미생물 등), 무형 결과물(예: 노하우, 공식)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권리(예: 특허권, 데이터 베이스권) 등이 포함
- 결과물에 프로젝트 외부 활동에서 생성/생산된 결과물은 포함되지 않음
- ※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려면 수혜자는 결과물 생성 방법 및 시점을 보여주는 실험 노트와 같은 문서를 보관해야 함
- 그랜트를 받은 수혜자는 그에 따른 결과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액션 종료 후 4년까지 최선을 다해 결과물을 활용하여야 함

#### ㅇ 결과물의 공동 소유

- 결과물을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두 명 이상의 수혜자가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게 됨
- 또한, 각 수혜자 간의 기여도를 확고히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결과물의 보호를 획득하거나 유지를 신청하려는 의도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됨
- 공동소유자들은 '공동소유협약'을 통해 서면으로 반드시 합의해야 함
- 컨소시엄 협약이나 공동 소유 협약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경우, 각 소유자는 다른 소유자에게 45일 전에 통지하거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한 후에 제3자에게 공동저작 결과물을 비독점 라이선스로 수여할 수 있음

### ㅇ 결과물 소유권의 양도

- 수혜자는 그랜트 협약서 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음



- 수혜자는 새로운 소유자가 협약서 하의 의무사항도 함께 양도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새 소유자가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의무사항이 지켜지도록 보장해야 함
- 또한, 양도 시 다른 수혜자들에게 최소 45일 전에는 통지해야 함

#### ㅇ 결과물의 라이센싱

- 수혜자는 결과물에 라이센스를 수여할 수 있음
- 독점 라이센스는 다른 수혜자가 접근 권한을 포기한 경우에만 수여될 수 있음
- (거부권) HE 액션의 '콜' 조건이 연구비 지원 당국에 양도나 라이센싱을 거부할 권한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액션 종료 후 최대 4년까지 소유권의 양도나 결과물의 독점 라이센싱을 거부할 수 있음
  - 결과물을 생성한 수혜자가 그랜트 하에 펀딩을 받은 경우
  - EU 역외 국가나 HE 제3국에 있는 법인에 양도하거나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경우
  - 연구비 수여 당국이 판단할 때 양도 또는 라이센스가 EU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연구비 지원 당국이 양도 또는 독점 라이선스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혜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함
  - 연구비 수여 당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기간 내에 수혜자는 양도나라이센싱을 할 수 없음
  - 연구비 수여 당국이 조건을 제시할 경우,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양도나 라이센싱을 할 수 없음
- (제한사항) EU 및 회원국의 전략적 자산, 이익, 자치권 또는 보안 문제 등으로 소유권의 양도나 결과물 라이센싱에 제한이 있는 경우
- 콜 조건이 위의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거나 통제를 하는 경우 수혜자는 결과물의 소유권이나 라이센스를 콜 조건에 적격 국가나 타겟 국가로 명시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위치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 연구비 지원 당국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 제외
- 연구비 지원 당국은 수혜자로부터 받은 액션과 관련된 민감하지않은 정보, 자료 및 문서를 배포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혜자의 자료, 문서 및 정보 사용권은 관련 공업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 전체기간 동안 로열티 없는 비독점, 변경 불가 라이선스의 형태로 수여
- 수혜자는 문서 또는 자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비 지원 당국이 해당 문서 또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비 지원 당국이 자료를 편집 또는 수정해야 하는 경우, 내용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요구됨



# 5 HE 감사 제도

# □ 점검(Check), 검토(Review) 및 조사(Investigation)

ㅇ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동안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① 점검(Check)

- 결과물 및 보고서 평가를 포함하여 그랜트에 따른 의무 준수 및 조치의 적절한 시행을 검사
- ※ 예) 집행위는 보고서를 받은 후 설명 및 워크 플랜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문서를 확인하고, 컨소시엄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중 펀딩 및 표절 검사를 수행함

#### ② 검토(Review)

- 집행위는 액션의 적절한 시행, 그랜트 계약에 따른 의무 준수 및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과학적/기술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
- 검토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기술적 구현(즉, 과학기술 관련)을 주로 언급하나, 재정 및 예산 측면 또는 협약서에 따른 기타 의무 준수도 다룰 수 있음
- ※ 검토는 밸런스 지불 후(즉, 그랜트의 최종 수여가 완료된 후) 최대 2년까지 실시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또는 검토 회의를 포함할 수 있음
- ※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보고서(review report)가 작성됨

# ③ 조사(Investigation)

-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유럽사기방지사무국(OLAF)은 그랜트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EU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예: 현장 검사 및 증인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음
- OLAF(European Anti-fraud Office)는 정보 교환, 현장 확인, 법의학 감사 조정 등을 통해 국가 당국과 협력하며, 집행위나 기타 출처로부터 의심 정황을 수신하면 조사 개시를 결정할 수 있음
- ※ 코디네이터, 수혜자 또는 이들 중 한 직원이 EU 공공 자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기 또는 기타 심각한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경우 이를 집행위나 OLAF에 직접 보고할 수 있음



# □ 감사(Audits)

- 집행위원회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또는 최종 지불 후 최대 2년 동안 언제든지 호라이즌 그랜트에 대한 감사를 명령할 수 있음
  - 감사는 집행위원회 자체 직원이 수행하거나, 집행위가 지정한 외부 사람 또는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할 수 있음
  - 감사관은 연구혁신을 위한 호라이즌 프로그램 및 감사에 관한 국제 표준에 따라 감사 대상 협약서의 조항을 고려하여 감사를 수행
  -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보고서 초안이 작성되어 감사 대상에게 발송되며, 30일 이내에 자신의 관찰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
  - 후에 감사관은 모든 관찰 사항을 편집하고 조정하여 최종 감사 보고서를 작성 및 발송함
  - ※ 적격 비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모든 비용은 회수되거나 다음 지불에서 공제됨
  - ※ 이 외에도 재정적 및 행정적 처벌을 포함한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럼섬 그랜트의 경우, 재무 점검, 검토 및 감사 없음

- 럼섬 그랜트의 경우 재무 기록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무 확인, 검토 또는 감사도 없음(단, 수혜자는 내부 절차나 국내법에 따라 재무 기록을 보관해야 할 것)
- 럼섬 그랜트의 점검, 검토 및 감사는 액션의 적절한 이행과, 결과의 보급 및 활용, 지적재산권, 오픈사이언스 의무, 윤리 및 연구 무결성에 대해서만 행해짐



# Ⅳ. 시사점

# □ HE 연구 주제 기획 과정에의 참여 가능성

- 우리 정부의 HE R&I 공동위,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등 한-EU
   R&I 실무자 및 의사결정자 간의 회의를 통해 공통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연구 주제를 기획할 수 있음
  - 일반적인 HE 준회원국 가입협약 제8조 1항에 따르면 양국은 1년에 최소한 번 이상 개최되는 R&I 공동위를 통해 R&I 관련 향후 방향성과 정책 우선순위, 공동 관심사의 연구 기획을 논의할 수 있음
  - 또한, 매년 개최되는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은 디지털 분야 관련 공통 관심사와 협력 분야를 논의할 수 있으며, 이에는 HE 및 JU를 통한 공동연구도 포함됨
  - ※ 우리나라의 HE 준회원국 참여가 확정되면, HE 프로그램 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단, 의결권은 없음)
- o 'HE 전략계획' 공동 설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주제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음
  - HE 연구주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HE 전략계획'은 EU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 설계 과정을 통해 만들어짐
  - 집행위는 공공 의견수렴, EU R&I Days와 같은 여러 활동을 통해 유럽의회, EU 회원국,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계획에 반영함
  - ※ 예로 '19년 HE 전략계획 2021-2024 공공 의견수렴에는 7천 명 이상이 설문조사 등에 응하였으며, EU R&I Days를 통한 전략 설정 토론에는 4천 명의 참여자가 참가한 바 있음
- 유러피안 파트너십에 참여할 경우 '전략적 연구혁신 의제(SRIA)'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음
  - SRIA는 파트너십의 분야 내에서 HE 전략 계획과 동일한 역할을 하여, SRIA가 설정한 방향성에 따라 파트너십의 워크프로그램이 만들어짐
  - 파트너십 참여시 회원국대표그룹 혹은 이해관계자그룹에 속하여 전략적 방향 설정에 조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국내 전문가들의 HE 과제 평가 참여를 통한 협력

- ㅇ 우리 연구자들의 활발한 HE 평가 참여를 위한 안내 필요
  - 평가위원은 성별, 출신 국가, 인종, 종교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HE 내 우리 전문가들의 활발한 평가 참여를 위해 NCP 등을 통한 전문가 DB 등록 및 관련 안내가 필요
  - ※ 예) 영국 [영국고등교육및과학부 웹페이지]
- o HE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연구원은 EU의 선정 기준을 숙지하는 등 경쟁력있는 제안서 작성을 통해 참여 성공률을 높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국내 연구자들은 EU 및 NCP 등이 제공하는 제안서 작성에 관한 교육훈련 세미나 등을 활용하도록 장려됨

#### □ EU 연구 결과 활용 정책 및 지식재산권

- o EU는 활발히 오픈사이언스 제도를 촉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활용 노력에 앞장서고 있음
  - EU는 연구 결과를 제품, 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및 창업, 고용 창출 등 유·무형의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개 제도와 방안을 수립하고 꾸준히 시도하며 개선점을 찾고 있음
  - EU의 이러한 노력은 H2020 프로그램 내에서 모든 과학 간행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및 데이터 관리 공개 보장을 확립시킴
  - 우리나라도 HE 참여를 통해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설정에 있어 EU의 오픈액세스 제도를 학습하고, 우리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EU와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모든 수혜자는 액션의 결과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오픈 사이언스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연구 결과물을 출판할 경우에 오픈액세스로 출판할 의무가 있으나, 결과물의 보호를 위해 충분히 연기될 수 있으며, 배포의 의무는 지적 재산 보호의 의무와 함께 병행되어야 함
  - 지식재산권 시스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요소는 없어 보이나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함



# □ HE 주요 감사 제도

#### o HE 주요 감사 제도 및 감사 기관

- HE의 주요 감사 제도로는 점검(Check), 검토(Review), 조사(Investigation) 그리고 감사(Audit)가 있으며, 이는 내부감사서비스(IAS), 유럽회계감사원 (ECA), 유럽검찰청(EPPO), 유럽사기방지사무국(OLAF)에 의해 시행됨
- 이 외에도 EU는 액션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액션 내부 감사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러한 내부 감사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음

#### ㅇ 재무 감사가 없는 럼섬그랜트

- EU는 연구 과제 관리 단순화를 위해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절차를 없애는 럼섬 그랜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럼섬 그랜트는 행정적 부담과 재정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연구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함
- 특히 집행위에 따르면 HE '23-'24년도 대규모 공동연구 프로젝트 콜의 20~25%가 이러한 접근방식을 채택할 예정으로, 대부분은 다국적 연구를 지원하는 필라2에 포함될 예정임
- 따라서 HE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기관들은 이에 맞게 추정 예산을 작성하는 등 럼섬 그랜트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할 것임

#### ※ Horizon Europe 관련 참조 문서는 해당 링크 참조